

발 간 등 록 번 호

75-6470057-000019-14

의정활동보고서

제239회 임시회(2010. 3. 25 ~ 4. 8)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김화진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푸르름이 힘차게 솟아오르는 새봄을 맞이하여 제239회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선거등록 업무가 시작되어 의정활동과 선거로 상당히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본연의 자세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눈비가 자주 오는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과 영농계획 수립,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녹색성장과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조속 추진,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철저한 준비와 현장 점검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추경예산과 도정질문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의원 개인별 수당에서 2000만 원을 모아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고자 기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미약한 정성이나마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실업률을 낮추고, 투자가 촉진되어 서민들의 경제적 아픔을 덜어주는 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도정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함과 동시에 선거업무로 인해 소홀해지기 쉬운 민원업무에 대하여서도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우리 도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생산적이고 보람 있는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3월 25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李 相 千

차 례

I. 개 황	4
II. 의사일정	6
III. 의안처리	14
IV. 민원처리	15
V. 본회의 보고사항	17
VI. 도정질문	25
☐ 김영기 의원(3차 본회의)	25
☐ 이준호 의원(3차 본회의)	32
☐ 백영학 의원(3차 본회의)	41
☐ 장길화 의원(3차 본회의)	51
☐ 이상용 의원(3차 본회의)	58
VII. 5분 자유발언	66
☐ 이상효 의원(1차 본회의)	66
☐ 박기진·김영기 의원(2차 본회의)	68

부 록

☐ 조례안	73
☐ 예산안	173
☐ 동의안	245
☐ 기타안	281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39회 임시회는 2010년 3월 25일 11:00 개최하여 4월 8일 까지 25일간의 회기 동안 3차의 본회의와 연 12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3월 25일(목)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이상호 의원)을 청취한 후 제2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2010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0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산회하였다.

휴회기간인 3월 26일부터 3월 30일,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1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9일부터 3월 30일까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통해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2010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를 증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1일(수)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박기진 의원, 김영기 의원)을 청취한 후 부위원장 선임 보고, 의원 사직의 건, 2010 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경상

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 등을 의결하고 산회하였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8일(목)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경상북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의결하고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권한대행,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에 관한 질문(김영기 의원, 이준호 의원, 백영학 의원, 장길화 의원, 이상용 의원)을 하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퇴로 공석중인 부의장 및 농수산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한 후 제239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한편, 이날 보궐선거를 통해 부의장에는 칠곡군 출신 송필각 의원, 농수산 위원장에는 영양군 출신 조동만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

Ⅱ.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다. 집회공고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0-6호(2010년 3월 15일)

라. 집회일시 : 2010년 3월 25일(목) 11: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10년 3월 25일 ~ 4월 8일(15일간)

나. 개의회수

○ 본회의 : 3회(누계 95회)

○ 위원회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 정 보건복지	교육 환경	농수산	통상 문화	건설 소방	특 위	
									예결	기타
238회 까지	801	44	126	116	115	106	106	116	55	17
239회	12	1	2	2	1	1	1	2	2	
누 계	813	45	128	118	116	107	107	118	57	17

※ 제8대 의회 누계임

3. 활동

가. 본회의

[illegible]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3.31(수) 11:00 (제2차)	4. 2010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가결
	5.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	원안가결
	8.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9. 경상북도개발공사 자본금(현물)출자 계획안	원안가결
	10. 경상북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1.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12.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3. 경상북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4. 경상북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5. 경상북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6. 2010년도 공유재산 수시관리 계획안	원안가결
	17. 경상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18.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9.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20.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21. 경상북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22.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3.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4.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3.31(수) 11:00 (제2차)	25.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26. 제2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7.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변경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4. 8(목) 11:00 (제3차)	☐ 안건처리 ○ 경상북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교육환경위원회 김영기 의원(청송군) ○ 농수산위원회 이준호 의원(청도군) ○ 통상문화위원회 백영학 의원(김천시) ○ 건설소방위원회 장길화 의원(비례대표) ○ 기획경제위원회 이상용 의원(영양군) ☐ 부의장 보궐선거 ☐ 농수산위원장 보궐선거 ※ 당선인사(부의장, 농수산위원장)	수정가결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3.25(목) 13:00 (제1차)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의회사무처 ☐ 안건심사 ○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240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기획경제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3.25(목) 14:00 (제1차)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기획조정실, 공보관, 공무원교육원 ☐ 안전심사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 ○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개발공사 자본금(현물) 출자 계획안	
3.26(금) 11:00 (제2차)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경제과학진흥국, 새경북기획단, 도청이전추진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3.25(목) 09:30 (제1차)	☐ 안전심사 ○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5(목) 14:00 (제1차)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감사관실, 보건복지여성국 ☐ 안전심사 ○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3.26(금) 11:00 (제2차)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경북도립대학 ☐ 안건 심사 ○ 경상북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학자금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2010년도 경상북도 공유재산 수시관리 계획안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행정지원국	

<교육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3.25(목) 14:00 (제1차)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환경해양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 안건 심사 ○ 경상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2010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 도교육청 ☐ 안건심사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3.26(금) 11:00 (제1차)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농수산국, 농업기술원 ☐ 안전심사 ○ 경상북도 민물고기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상문화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3.26(금) 11:00 (제1차)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관광산업국, 문화체육국, 투자통상국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3.25(목) 14:00 (제1차)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소방본부 ☐ 안전심사 ○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제정조례안	
3.26(금) (제2차)	☐ 2010년도 업무보고 ○ 낙동강살리기사업단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건설도시방재국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3.26(금) (제2차)	☐ 안전심사 ○ 경상북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 경상북도 도로점용로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3.29(월) 10:30 (제14차)	☐ 2010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30(화) 10:30 (제15차)	☐ 2010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10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위원 선임의 건 ☐ 2010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토론 및 의결 ☐ 2010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토론 및 의결	

Ⅲ. 의안처리

※ ()내는 제8대 의회 누계임

구 분		부 의	심 의 · 의 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폐 안			
				원 안	수 정					
계		31 (435)	30 (428)	27 (347)	3 (76)	0 (4)	0 (1)	0 (2)	1 (5)	
조 례 안	소 계	21 (267)	20 (262)	17 (205)	3 (53)	0 (3)	0 (1)	0 (1)	1 (4)	
	의 회 제 안	5 (70)	5 (68)	3 (56)	2 (12)				0 (2)	
	도지사 제 출	14 (148)	13 (146)	13 (113)	0 (30)	0 (2)	0 (1)	0 (1)	1 (1)	
	교육감 제 출	2 (49)	2 (48)	1 (36)	1 (11)	0 (1)			0 (1)	
규 칙 안		0 (4)	0 (4)	0 (3)	0 (1)					
예산 · 결산		2 (36)	2 (36)	2 (16)	0 (20)					
동의 · 승인		3 (40)	3 (39)	3 (38)	0 (1)				0 (1)	
건 의 안		0 (8)	0 (7)	0 (7)				0 (1)		
결 의 안		0 (20)	0 (20)	0 (18)	0 (1)	0 (1)				
기 타 안		5 (60)	5 (60)	5 (60)						

□ 상임위 계류중인 안건(5건)

-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경제위원회 - '07. 3.14 상정유보)
- 경상북도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행정보건복지위원회 - '07. 6.12 심사유보)
- 경상북도지방행정동우회육성 및 지원조례안(행정보건복지위원회 - '07.11. 5 상정유보)
- 경상북도난치병 학생 의료비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교육환경위원회 - '09. 2.12 심사유보)
- 경상북도 학자금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행정보건복지위원회 - '10. 3.26 심사유보)

Ⅳ. 민원처리

1. 청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1		1	1	

※ 누계는 제8대 의회 실적

2. 진정

가. 접 수

위원회	계	행 정	사 회 문 화	교 통	건 설	교 육	경 제	환 경	농어업	기 타
계	1 (107)	(7)	(12)	(6)	1 (47)	(4)	(2)	(7)	(7)	(15)
의 회 운 영	(3)	(1)								(2)
기 획 경 제	(16)			(5)	(3)		(1)			(7)
행 정 보건복지	(14)	(6)	(5)							(3)
교 육 환 경	(9)					(4)		(5)		
농수산	(9)							(1)	(7)	(1)
통 상 문 화	(10)		(7)	(1)			(1)	(1)		
건 설 소 방	1 (43)				1 (42)					(1)
특 별 위원회	(3)				(2)					(1)

※ ()내는 제8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위 원 회	처 리					처 리 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1 (107)	1 (107)				
의회운영	(3)	(3)				
기획경제	(16)	(16)				
행 정 보건복지	(14)	(14)				
교육환경	(9)	(9)				
농 수 산	(9)	(9)				
통상문화	(10)	(10)				
건설소방	1 (43)	1 (43)				
특별위원회	(3)	(3)				

※ ()내는 제8대 의회 실적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 27건(조례안 20, 예산안 2, 기 타 5)

제 출 자 (제 출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경상북도지사 (2010. 3.15)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각 상임위 (2010. 3.19)
경상북도지사 (2010. 3.12)	경상북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 (2010. 3.19)
경상북도지사 (2010. 3.12)	경상북도 재정보전금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 (2010. 3.19)
경상북도지사 (2010. 3.12)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 (2010. 3.19)
경상북도지사 (2010. 3.12)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의결안	기획경제 (2010. 3.19)
경상북도지사 (2010. 3.12)	경상북도개발공사 자본금(현물)출자 계획안	기획경제 (2010. 3.19)
경상북도지사 (2010. 3.15)	경상북도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기획경제 (2010. 3.19)
경상북도지사 (2010. 3.12)	경상북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보건복지 (2010. 3.19)
경상북도지사 (2010. 3.12)	경상북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행정보건복지 (2010. 3.19)
경상북도지사 (2010. 3.12)	2010년도 공유재산 수시관리 계획안	행정보건복지 (2010. 3.19)
경상북도지사 (2010. 3.12)	경상북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보건복지 (2010. 3.19)
경상북도지사 (2010. 3.12)	경상북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보건복지 (2010. 3.19)

제 출 자 (제 출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김숙향의원외 19인 (2010. 3.15)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보건복지 (2010. 3.19)
경상북도지사 (2010. 3.15)	경상북도 시·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보건복지 (2010. 3.19)
장경식의의원외 11인 (2010. 3.19)	경상북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행정보건복지 (2010. 3.22)
경상북도지사 (2010. 3.12)	경상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교육환경 (2010. 3.19)
경상북도교육감 (2010. 3. 9)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환경 (2010. 3.19)
경상북도교육감 (2010. 3. 9)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환경 (2010. 3.19)
경상북도교육감 (2010. 3. 9)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교육환경 (2010. 3.19)
경상북도지사 (2010. 3.12)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 수 산 (2010. 3.19)
경상북도지사 (2010. 3.12)	경상북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 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건설소방 (2010. 3.19)
경상북도지사 (2010. 3.12)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 (2010. 3.19)
경상북도지사 (2010. 3.12)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안	건설소방 (2010. 3.19)
장길화의의원외 19인 (2010. 3.15)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건설소방 (2010. 3.19)
고우현의원외 19인 (2010. 3.15)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 (2010. 3.19)
도의회 의장 (2010. 3.15)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본 회 의 (2010. 3.19)
도의회 의장 (2010. 3.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본 회 의 (2010. 3.19)

2. 조례공포 사항(13건)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10.02.11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0.02.18 (제3152호)
2010.02.05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0.02.22 (제3153호)
2010.02.05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0.02.22 (제3154호)
2010.02.05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0.02.25 (제3155호)
2010.02.05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2010.02.25 (제3156호)
2010.02.05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2010.02.25 (제3157호)
2010.02.05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2010.02.25 (제3158호)
2010.02.05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0.02.25 (제3159호)
2010.02.05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0.02.25 (제3160호)
2010.02.05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지방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	2010.02.25 (제3161호)
2010.02.05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2010.02.25 (제3162호)
2010.02.11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10.02.25 (제3163호)
2010.02.11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2010.02.25 (제3164호)

3. 위원회 활동사항

위 원 회	일 시	장 소	활 동 내 용
동 남 권 신국제공항 유치특별 위 원 회	2010. 2.11 (목)	밀양시의회	○ 경북·대구·경남 시도의회 특위위원장 밀양시의회 방문 • 밀양입지 당위성과 필요성 등 체험 • 1천만명 서명운동 전개를 위한 공동 성명서 발표 ※ 김영기 특위위원장 참석

4. 의원신분 변동사항

소속상임위	성 명	변동사항 (변동일)	사 퇴 사 유	비 고
행정보건복지	이 우 경	의원직 사퇴 (’10. 2.18)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교육환경	김 응 규	의원직 사퇴 (’10. 2.19)	”	
통상문화	박 병 훈	의원직 사퇴 (’10. 2.19)	”	
건설소방	이 현 준	의원직 사퇴 (’10. 3.19)	”	
농 수 산	박 노 욱	의원직 사퇴 (’10. 3.22)	”	
농 수 산	윤 영 식	의원직 사퇴 (’10. 3.22)	”	

5. 의원동정

○ 「장길화 의원」 대구대학교 공학박사 학위 취득

- 일 시 : 2010. 2. 19(목), 10:00
- 장 소 : 대구대학교
- 논문명 : “신규 조선소 입지선정을 중심으로 다기준 의사결정
도구를 이용한 공장입지 최적선정”

6. 기타 의정활동 사항

○ 2010년도 미래전략아카데미 제1차 운영위원회

- 일 시 : 2010. 2. 18(목), 17:00
- 장 소 : 호텔인터블고
- 참 석 : 이상태 기획경제위원장

○ 경북천연염색산업연구원 설립 발기인 대회 및 창립대회

- 일 시 : 2010. 2. 19(금), 15:40
- 장 소 : 영천시청 대회의실
- 참 석 : 이상태 기획경제위원장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정기총회 신년인사회

- 일 시 : 2010. 2. 22(월), 12:00
- 장 소 : 호텔 제이스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제13회 경상북도 산업평화대상 시상식

- 일 시 : 2010. 2. 22(월), 14:00
- 장 소 : 도청강당
- 참 석 : 이상천 의장, 한혜련 통상문화위원장, 도의원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이사회

- 일 시 : 2010. 2. 23(화), 11:00
- 장 소 : 문화재연구원 회의실
- 참 석 : 한혜련 통상문화위원장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 일 시 : 2010. 2. 25(목), 14:00
- 장 소 : 충청북도의회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생존 애국지사 위문방문

- 일 시 : 2010. 2. 25(목), 15:00
- 장 소 : 채주형 애국지사(경주 성건동)
- 참 석 : 이상효 부의장

○ (사)한국수산업경영인경북연합회 제13대 회장단 취임식

- 일 시 : 2010. 2. 25(목), 16:00
- 장 소 : 포항 청솔밭웨딩홀
- 참 석 : 이상효 부의장

○ 2010년도 포항지능로봇 정기 이사회

- 일 시 : 2010. 2. 25(목), 10:30
- 장 소 : 포항지능로봇연구소 대회의실
- 참 석 : 이상태 기획경제위원장

○ 경북농민사관학교 합동 개강식

- 일 시 : 2010. 2. 26(금), 15:00
- 장 소 : 군위교육문화회관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생존 애국지사 위문방문

- 일 시 : 2010. 2. 26(금), 17:30
- 장 소 : 경북광복회장 자택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제91주년 3.1절 기념식

- 일 시 : 2010. 3. 1(월), 10:00
- 장 소 : 안동시민회관
- 참 석 : 이상천 의장

○ 대구경북지역 업무보고회

- 일 시 : 2010. 3. 5(금), 10:00
- 장 소 : 대구시청 회의실
- 참 석 : 이상천 의장, 이상효 부의장

○ 경상북도 · H Mart간 대학생 해외인턴사원 채용 MOU 체결식

- 일 시 : 2010. 3. 5(금), 18:00
- 장 소 : 대외통상교류관
- 참 석 : 한혜련 통상문화위원장

○ 경북 파트너쉽협의회

- 일 시 : 2010. 3. 8(월), 14:0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이재철 통상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울릉도 · 독도 DMB 개국 행사

- 일 시 : 2010. 3. 17(수), 15:00
- 장 소 : 울릉 도동항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상주농업기계박람회 개막식

- 일 시 : 2010. 3. 24(수), 11:00
- 장 소 : 상주 북천시민공원
- 참 석 : 이상천 의장

VI. 도정질문

□ 2010년 4월 8일(목) 제239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김영기 의원(교육환경위원회) ◎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환경위원회 청송 출신 김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님과 올바른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김화진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미력하나마 도정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내 조기발주 관급공사 지역 업체 참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관내 관급공사의 상당수가 상반기에 조기 발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급공사의 조기발주는 고용유발 효과와 산업에 대한 생산유발 계수가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건설 산업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 전체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내 지역 업체가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행 관계법상 여러 가지 제약도 있겠지만 지역 내 발주관청에서는 지역 업체의 보호와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의 참여폭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대략 5조 원 규모의 관급공사가 금년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될 예정이며, 이중 도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약 2조 원, 23개 시·군에서 약 3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2년간 관급공사 참여 업체에 대한 경북업체의 계약현황을 파악한 결과 2008년도는 1억 원 이상 10억 원까지는 11개 업체 중 도내 업체가 10개로, 10억 원 이상 20억 원까지 공사는 1개 업체에 도내 업체는 1개로, 20억 이상 공사는 8개 업체 중 도내 업체는 4개로, 2009년도의 경우 1억 이상 10억 공사는 9개 업체로 그 중 도내 업체는 4개로 44.4%, 10억 원 이상 20억

원 공사에서는 도내 업체가 없으며, 20억 원 이상 공사는 34개 업체 중 도내 업체는 23개로 67.6%에 불과하여 공사금액이 높아질수록 경북업체의 계약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체 공사금액 중 도내 업체가 차지하는 수주금액은 56.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목 놓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고 아무리 다양한 대안을 내놓다 하더라도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지역 업체의 참여폭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관급공사에 지역 업체의 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분리발주를 추진한다든지, 외주업체가 수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높인다든지, 설계 및 감리 용역에서부터 지역 업체에 일정 할당률을 정해 놓는다든지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도지사의 강력한 의지와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해당 공무원들의 노력과 열정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도지사께서는 조기발주 관급공사와 관련해서 지역 업체 수주기회를 예전보다 높이고 참여폭도 더욱 넓히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 확대와 함께 전체 공사 금액면에서도 지역 업체가 차지하는 수주금액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열악한 교통문화지수와交通安全 수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交通安全공단의 2009년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경북은 9개 도와 비교해 종합순위에 7위를 기록하여 2008년도에 비해 3계단이나 하락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교통문화지수를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북의 경우 교통약자 영역에서 노약자나 임산부,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매우 미흡하여 최하위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말 도로交通安全공단이 실시한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交通安全지수 분석에서도 전국 평균 71.41점에 훨씬 못 미치는 66.96점을 기록했고, 특히 100위권 밖에 랭크된 지역이 13개 시·군, 200위권 밖에 랭크된

지역이 무려 7개 시·군이 나왔을 정도 교통안전지수 면에서는 전국 최악의 수준을 면치 못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의 교통안전의식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최근 발행된 손해보험협회 월간지를 보면 2008년도와 2009년도 모두 인구 10만 명당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수가 전국에서 경상북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경상북도의 교통문화와 교통안전의식이 불감증에 가까울 정도로 타 시·도에 비해 많이 낙후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 전적으로 그 책임이 있다고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2009년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보고서에 9개 도와 비교한 종합순위에서 7위를 기록하여 2008년도에 비해 3계단이 하락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4개 평가영역 중 교통약자 영역 부분에서 최하위의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노인을 중심으로 우리 도의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안전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5년도 26.7%, '06년도 27.4%, '07년도 29%, '08년도 29.6%, '09년도 30%에 육박하였습니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여 활동량이 줄어드는 야간에 전체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이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운전자들의 시인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노인 교통사고가 무방비로 노출되어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늘어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는 노인 교통사고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도내 조기발주 관급공사 지역 업체 참여 확대방안에 대해서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열악한 교통문화지수와 교통안전 수준 대책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질문과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셋째, 부정·불량 비료 및 농약 불법 유통과 불공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검찰, 경찰, 지자체 등 관계 당국 합동 단속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유사회발유가 적발되어 경북이 전국 최대 유사회발유 유통지역으로 사회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약효도 검증 안 된 부정·불량 비료와 농약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경상북도 부정·불량 비료와 농약 적발 건수 현황’을 보면 ‘07년 16건, ‘08년 15건, ‘09년 25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 「시·도별 부정·불량 비료 및 농약 단속 5년간 현황(2005년~2009년)」을 보면, 부정·불량 농약 적발 건수는 전북, 충남, 충북에 이어 45건으로 경북이 네 번째로 많았으며, 부정·불량 비료 적발 건수는 34건으로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적발된 부정·불량 비료와 농약을 유형별로 보면, 약효보증기간 위반, 취급제한 기준 위반, 무등록, 보증표시 위반, 효력 오인, 유통기간 경과 등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특히, 고독성 농약이나 파라쿼트 등 특별 취급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일반 농약과 같이 판매하여 사용했을 경우 표백제의 거의 100배에 가까운 독성이 농산물에 잔류된 채 시중에 유통·생산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중국산 무등록 밀수농약과 관련하여 지베렐린도포제와 아바멕틴, 석회유황합제 등의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통과하지 않은 부정·불량 농자재의 유해 성분은 인체에 치명적인 것으로 발표된 적이 있으나 그에 대한 안전성은 검증

조차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농작물이 고사하거나, 농작물이 기형적으로 성장할 정도로 그 독성이 엄청난 농약과 비료를 먹고 성장한 농·식품들이 우리의 식탁에까지 올라오게 될 경우 인체에 누적되어 치명적인 위험과 기형아 출산에 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심각한 것들입니다.

농·식품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이들 부정·불량 비료와 농약, 중국산 밀 수입 농자재 등은 농작물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주민의 안전도는 물론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업진흥청에서는 이미 각 지자체에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및 사법고발 등 의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고 부정·불량 비료·농약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3년간 부정·불량 농약 및 비료 유통과 관련해서 적발한 위반사항 중 ‘기준미달비료’의 경우 어떤 경우는 경고인데 비해, 어떤 경우는 영업정지였습니다. 또한 ‘수분함량 기준 미달’의 경우 어떤 경우는 경고이며, 어떤 경우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다르게 적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행정처분을 다르게 적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부정·불량 비료보다 농약에 대해서는 밀수입 농약 판매만 제외하고 모두 가벼운 경고에 그쳤는데 고독성 농약에 대해서도 경고 수준에 그쳐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세감소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2010년도 전국 16개 시·도별 재정자립도 현황이 경북의 경우 29.3%로 전국평균 자립도 52.2%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광역시를 제외한 8개 도 평균 39.2%에도 훨씬 못 미치는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재정분석평가 결과에서 경북도의 경우 재정 건전성 분야의 경상비용 비율 및 채무 관련 지표가 양호한 편이나 지방세 증감률이 지표값 -5.62로 전국 평균 6.13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특히 2008년도의 경우 지방세 신장률이 2.5%로 전국 평균 4.5%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북도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 습니다.

이와 더불어 2008년도 경북도의 지방세 징수율은 90.0%로 전국 평균 91.5%에 못 미치며, 16개 시·도 중 열세 번째로 징수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세원 행정 역시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서는 자체 재원 비율을 높이고 의존 재원 비율을 낮추기 위한 혁신적인 재정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점점 더 열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어서 본 의원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각종 사업에서 국비확보를 통한 원활한 추진도 중요하나 무엇보다도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확보가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09년도에 펴낸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측정에 관한 연구’에서 종부세, 법인세 등의 감세로 지방에 돌아갈 교부금이 줄어서 2012 년까지 지방세수가 30조 1741억 원 안팎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지방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도입된 지방소비세는 5조 8000억 원 가량의 순증효과를 낼 뿐이어서 2012년까지 지방정부의 세수는 24조 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의 경우 2조 7314억 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지역경제 사정을 감안하고 더욱 더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안정과 성장에 바탕을 둔 생산적이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 차원의 세수기반 확대 및 효율적인 세원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지방재정운용 및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감소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세수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유치, 인구유입 등과 같은 중·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으로는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과 세원관리 체계화 등과 같은 세수입 기반 확충을 위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김화진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울수록 맡으신 일에 애정과 정성을 다한다면 그 작은 정성들이 모여 큰 경복을 만들 것으로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고생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힘차고 아름다운 경복’이 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10년 4월 8일(목) 제239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이준호 의원(농수산위원회) ◎

먼저, 지사님 공천 확정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청도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준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는 최근 서민 체감경기의 효과적 부양을 위해 예산의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언제 끝날지 불투명한 상태이며, 실업률 역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지금은 무엇보다 서민을 위한 경기부양책이 시급한 때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도민의 진정한 공복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보다 책임 있는 의식과 자세를 가지고 지역사회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보다 심각하게 고민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져 왔던 도정 현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지사님과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통상 해외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대구·경북인들은 공항리무진을 타고 무려 4시간, 왕복으로는 8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시간을 다투는 기업들에게 비행기 타러 오고가는 데만 하루가 걸린다는 것은 곧 수도권 기업에 비하여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최악의 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진행되는 지역의 연구·개발지구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성공하고 또한 내륙도시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이라는 광역경제권이 성공하기 위해서 세계와 직접 통하는 출구, 즉 동남권 신공항이 있어야 함은

우리의 당위적인 명제라 할 것입니다.

또한 세계와 경쟁하는 시대에 세계와의 접근성 없이는 영남권 경제의 미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시대의 경제가 국가간 경쟁에서 광역경제권 단위로 경쟁하고 있는 만큼 영·호남·충청 전체를 아우르는 초광역경제권을 형성하여 동북아시아의 경제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남권 신국제공항이 조속한 시일 내에 건설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동남권 신국제공항 대구경북추진위원회는 2009년 10월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회의원, 공항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남부권 전체를 포함하는 신국제공항의 최적지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2009년 11월 포항에서 동남권 신국제 공항 건설과 포항권 발전전략의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동남권 신공항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에 국·내외 항공연구기관의 분석결과에 의하여 대구·경북·경남·부산·울산 등 5개 광역지자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남부권 중심인 밀양이 최적지라는 의견을 재차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올 2월 경남도와 경남발전연구원도 후보지로 거론되는 부산 가덕도보다는 밀양 하남이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에서 우위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외 지방공항 무용론 확산 기류와 부산이 내세우는 가덕도는 공항 건설비용 1조 4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해외의 우수 공항이 해안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또한 가덕도는 소음피해가 없으며, 항만과 공항이 연계되면 세계적 물류센터로 성공할 수 있다는 논리로 신공항 후보지를 고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밀양 신공항이 선정된다면 대구·경북·경남·호남·충청도까지 통합하는 초광역경제권 형성과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극대화를 가져 올 것을 예상하며, 지역이 처한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광역경제권이 제대로 형성되고 작동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공항은 반드시 밀양에 입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올해 3월 5일 이명박 대통령 방문 업무보고에서 경북도는 대구시와 함께 동남권 신국제 공항 조기건설을 강하게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의하는 것도 좋지만 건의만이 아닌 구체적인 대책마련과 행동으로 우리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동남권 신공항 대구·경북추진위원회와 경남추진위원회와 함께 긴밀히 협조하여 수도권외 지방공항 무용론을 타파하는 동시에 동남권 신국제공항의 최적지로 밀양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 당위성과 시급성을 정부에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샛강 복원사업, 북경남 변전소 건설사업과 고압 송전선과 관련, 그리고 청도 소싸움장 개장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만, 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폐교활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학교는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지역 공동화와 맞물려 최근 경북도내 농어촌지역 학교는 학생 수의 심각한 감소와 함께 폐교되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각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이러한 폐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경북도내 폐교 수는 49개교로 현재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 등으로 대부된 곳이 10개교, 자체활용 15개교인데 반해 미활용인 폐교 수가 24개교로 전체의 49%에 달합니다.

그러나 미활용인 폐교들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매각 추진 중인 폐교가 8개교, 대부계획 10개교, 연수원 및 그린스쿨사업 등의 자체활용 4개교입니다.

이처럼 도내 폐교가 점점 늘어나면서 폐교 관리 및 운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교육목적과 지역민들의 요구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역주민과는 동떨어진 폐교활용 및 개인 사업자들에 대한 단기임대로 인해 폐교의 지속적인 활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 이러한 폐교의 미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경북도 차원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상당히 미흡합니다. 폐교활용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되나, 교육청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운영되고 있어 본 의원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특히 청도군 화양읍 유등초등학교는 지난 1994년 3월에 폐교되어 현재 개인에게 대부하여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청도군 차원에서 유상대부를 통한 폐교활용보다는 매각하여 지역의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교육청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유등초등학교는 개교당시 지역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기증하여 학교부지로 활용된 것인 만큼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폐교활용의 효과가 단순히 개인에게 미치기 보다는 더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오히려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어촌의 폐교활용 문제는 한두 가지 측면만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폐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폐교활용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문화의 집을 통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보급, 지역문화회관으로의 변신 등이 지역주민들과 융화되지 못한 채 실패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 권한대행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폐교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지역주민들에게 교육공간의 부재로 인한 손실에 대해 다양한 방안으로 1차적 혜택은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비록 교육시설로서의 기능은 다했다 하더라도 지역의 중심공간이자 구심점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폐교활용 방안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하며, 폐교를 매각이나 임대할 때 지역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임대보다는 매각을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현재 유상 대부중인 유등초등학교를 매각하여 지역 주민들의 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샛강 복원사업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한반도를 관류하는 4대강을 정비하고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양질의 수자원을 확보하고 홍수 등 자연재해를 방지하는 여러 효과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에서는 생태·역사·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낙동강 문화권 형성이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연계하여 물 부족과 홍수예방,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친환경적인 생태계 조성, 녹색뉴딜사업으로 지역경제상생, 역사·문화 레포츠 등 첨단복합문화 공간 조성개발, 생태체험 중심의 관광자원개발이라는 전략과제를 가지고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지난 3월 10일 보도에서 환경친화적인 4대강 조성을 위해 4대강 살리기 주변지역 35개 지구에 모두 39곳의 생태습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그 중에서 낙동강과 샛강이 합류하는 곳에 샛강형 습지 3개소와 주변 개방형 습지 3개소를 만들고,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능을 가진 정화형 습지 2개를 만들어 총 8개의 생태습지를 계획하고 추진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4대강 큰 강 살리기는 근원적으로 샛강 살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샛강을 방치한 큰 강 살리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큰 강이 대동맥이라면 샛강은 모세혈관으로 모세혈관이 튼튼해야 혈액순환이 원활하여 건강하듯 샛강이 깨끗해야 큰 강 ‘4대강 사업’과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당초의 목표였던 환경친화적 사업으로 성공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경북도는 올해부터 도내 샛강·실개천 수생태계를 복원하고, 환경기초시설 등을 개선해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차단할 계획으로 180억 원을 투입해 도내 10개 샛강 및 실개천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도지역의 경우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추진하는 생태습지 8개 중에서 개방형 생태습지로 청도천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샛강 생태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보존과 친환경적 개발을 통한 자연 순환 생태 공간 조성으로 신성장 녹색개발 기반확보와 생태·

체험·교육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과 국가차원의 복합형 거점 형성으로 셋강 생태사업을 선도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립셋강생태자원관” 건립을 청도지역에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국립셋강생태자원관”은 국비가 20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북도 차원에서 국가지원 사업으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여 청도의 “국립셋강생태자원관” 건립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북경남 변전소 건설사업과 고압 송전선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경기도 삼하리 상촌마을의 송전탑이 건립되고 그로인해 지역 주민 암발생 의혹이 제기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수마을로 불렸던 곳에 송전탑이 건설되고부터 5년간 암환자가 29명 이상 발생하여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한 대대적인 역학조사가 실시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현재 의학계에 보고된 송전탑의 전자파는 사람과 동물에게 백혈병, 생식기능 파괴, 임산부의 유산 및 기형아 출산, 암세포 증식, 알츠하이머병, 세포와 조직에서 기능변화 등 많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송전탑 건설과 전자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최근 한국전력공사는 창녕군 성산면 방리의 북경남변전소에서 경북 청도군 풍각면·각북면 일원, 대구~고령 송전선로간을 연결하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으로 인해 인근의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연고를 둔 주민들 입장에서는 변전소 건설사업,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전자파 피해, 재산적 및 정신적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이 사업들은 애당초 주민 동의와 실태조사도 없이 주민을 무시하는 형태로 공사를 강행하였으며, 발전소 건설사업에서 창녕군 방리보다 청도군 풍각면 안산리가 더 가깝지만,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풍각면 안산리의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도 않고, 또 안산리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사업을 강행함으로써 가축피해와 주민들의 건강권의 피해가 상당히 우려됩니다.

이와 아울러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사업 계획안에서 풍각면 10개 마을과 각북면 4개 마을로 송전선로가 지나감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송전선로 공사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청도군과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영향평가 역시 배제되어 있어 작년 11월경 도지사님께 ‘국토사랑 범청도군민연대’가 공익사항에 관한 경상북도 도지사님께 드리는 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도군민들의 간절한 바람은 변전소 건설사업에서 배제된 환경영향평가와 송전선로 변경, 주민의견 청취 등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변전소 건설공사가 재검토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전선로 공사는 경남 기장, 밀양, 창녕 등에서 심각한 주민반발로 송전선로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충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한전이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한전은 청도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해당지역 주민들은 변전소 건설사업과 송전선로 건설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경북도와 도지사님의 여기에 대한 구체적 대안과 견해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청소 소싸움 개장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 “청도소싸움축제”가 지난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상설소싸움경기장에서 국·내외 언론사와 48만 명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개최 되었습니다. 이처럼 청도 소싸움 축제는 청도군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 되었으며, 지역관광의 메카로 더 나아가 우리 청도군과 경북도의 이미지와 브랜드 제고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적 축제로 거듭나고 있는 “청도소싸움축제”의 위상과는 달리 청도소싸움장의 개장에 따른 지원책은 미흡하기 그지없어 오히려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각인되고 있어 본 의원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청도소싸움장 건설사업은 전통 소싸움 경기를 문화상품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청도군이 독자적으로 수백억 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수년간 경기장 건설

사업비 투자 및 관련 법률의 입법화를 추진하는 등 지역주민과 청도군의 지역 발전을 위한 땀과 노력이 녹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세수창출 뿐만 아니라 낙후된 지역경제 및 축산발전에 이바지 할 공익적 기능이 지대한 청도 소싸움장이 개장을 목적에 두고도 여전히 개장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청도공영사업공사의 “상설 소싸움경기장” 건립은 국비 48억 원 도비 11억 원, 군비 28억 원, 민간자본 554억 원 등 모두 641억 원이 투입된 거대 사업입니다. 이처럼 청도소싸움 경기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싸움 전용경기장 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돔형 전천후 경기장으로서의 역할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설소싸움경기장이 조속한 개장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약 80억 원의 개장준비 자금이 더 필요합니다. 현재 청도군에서는 이러한 개장 준비자금 80억 원 중 50억 원 정도를 확보한 상태이며, 전산입력 보장 및 개장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엄청난 공공예산과 민간 자금이 투입되고도 이렇게 오래 표류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엄청난 손실이며, 더 나아가 경북도의 관광산업의 시너지 효과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 8월 국토해양부의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으로 청도군은 바야흐로 관광과 특화산업의 집중육성이 이루어지는 중차대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소싸움장 개장지연이 청도군과 경상북도 관광산업의 발전에 발목을 잡게 된다면 그에 대한 막대한 손실과 파장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도시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청도소싸움장의 조속한 개장을 위하여 도차원에서 초기 투자비용 중 일부인 10억 원을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레저세 감면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청도소싸움장이 개장되면 우권 매출액의 10%의 레저세가 도의 세입으로 확충 되는데 대략 연간 11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도 사업의 초기에 일정기간 레저세를 감면하여 지역의 레저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광명경륜장의 경우, 경기도 남부 레저세율의 50%, 부산·경남 경마장의 경우, 부산광역시·경상남도에 남부 레저세율의 20%, 부산경륜공단은

레저세의 50%를 감면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차원에서 레저세 감면 등을 통한 전폭적인 제도적 뒷받침으로 청도군의 관광산업발전과 더 나아가 경북도의 관광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도군은 경마의 마권(馬券)처럼 소싸움에도 우권(牛券)을 발행해 우승한 소를 맞히면 돈을 타는 베팅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권이 발행될 경우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지역에 미칠 영향분석과 함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에 장외발매소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0년 4월 8일(목) 제239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백영학 의원(통상문화위원회) ◎

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김천 출신 통상문화위원회 소속 백영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도정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니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도정발전이라는 정책대안으로 생각하시고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심각하게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저출산과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노동력 감소를 불러와서 생산활동을 축소시키고, 인구감소로 시장에서 구매력이 감소됩니다. 세수입 부족으로 이어져 비효율적인 국가운영 등 모두에게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래는 항상 미래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곧 현실로 다가온다는 데 우리들은 시선집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09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출산율은 1.15명입니다. 고령화 지수는 63.5로 내용상 저출산과 고령화가 매우 심각하며, 세계 최저 출산율에 직면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갖가지 해결책을 내놓지만 현실로 다가오는 정책은 아직 미미한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 경북의 출산율은 1970년 4.53명, 2000년 1.47명, 2008년도에는 1.19명으로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인구대체 수준인 2.1명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이고, 경북 전체 인구수는 2008년 하반기에서 2009년 하반기까지 4436명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저출산이 그 원인의 하나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경북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경상북도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다복가정 희망카드제 시행, 다자녀가정 자동차 구매 할인을 위한 MOU체결, 출산친화기업 발굴 및 선정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저출산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임신, 출산, 보육의 3단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총 3211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도민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참여 유도를 위해 각종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상 저출산 대책 추진에 단기적이고 홍보 중심의 정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가령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전국 지자체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이벤트성에 그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거나 못해서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양육 및 가사부담으로, 그리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것도 하나의 일입니다. 단순한 결혼을 성사시키는 지원책은 출산율에 대한 진정한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임신에서 육아를 책임지는 사회적·의료적 시스템과 사회적으로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등 현실성 있는 출산장려 정책이 시급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아문제로 직장을 고민하고, 양육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는 자연적으로 저출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가정이 증가할 것이며, 가까운 미래에 우리 모두는 저출산의 고통으로 사회적·경제적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북도에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 처방과 종합계획을 세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 차원의 대책으로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최대 위기라는 상황 하에서 국가에서 인구정책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과 아울러 출산율 회복은 특성상 단기에 성과를 거두기에는 어렵고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자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와 함께 경북도는 출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출산을 희망하는 여성과 임신부가 만약 출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와 지원대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여도 일반인은 아직도 어디에 문의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출산장려 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홍보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저출산 해결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 및 향후 시행할 현실성 있는 대책 및 사업홍보 방안에 대하여 도지사께서는 구체적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도 교육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교육비 대책 및 예·체능 교육부실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교육은 우리 교육이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학교교육과 사교육은 ‘공부’라는 수레를 끌고 가는 양축으로 인식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어느 한 축이 없다는 것은 이제는 상상도 되지 않을 정도로 사교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교육은 우리의 교육 현실에 너무나도 단단히 자리 잡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학원생활이 아이들 삶에 있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버렸고, 실제로 공부하는 곳은 학교라기보다는 학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적도 학원이 더 잘 관리를 하여 준다고 여기고 있고, 학벌경쟁사회가 빚은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그간 교육 당국이 수없이 해법을 제시하였으나 사교육 시장은 갈수록 팽창하고 있어 교육개혁도 사교육 의존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북도의 사교육비가 전국 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경북도의 경우 19만 7천 원, 경기도 26만 9천 원, 경상남도 21만 3천 원 다음으로 높아 도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타 도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 참여율의 경우에도 경북의 경우 74%로 경기도 77.4%, 경남 75.6%에 이어 높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가 타 시·도에 비해 상당히 높아 도내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나, 투자되는 사교육비에 비해서 도내 학생들의 학력 수준향상은 인성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예체능 교육의 부실에 대한 문제를 또 한번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대학입시 여건상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과목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예체능 과목을 줄여가면서까지 몰입하는 것은 올바른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체능 분야 인재양성에도 마땅히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공부 잘하는 인재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특별한 소질을 길러낼 수 있는 교육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부 잘하는 학생과 미술, 음악, 체육교육에 대한 지원은 물론, 그동안 소외되었던 전문계고등학교와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더 큰 세상에서 건문을 넓혀줄 수 있도록 도 교육청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 자율화 바람이 예·체능 수업의 축소로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전인교육에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적정한 신체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올바른 인격형성에 마이너스 효과가 우려되고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10년 3월 현재까지 경북도내 고등학교별 예체능 수업시간은 특목고가 총 1253시간 중 63시간으로 예체능 수업비중 5% 수준입니다. 자율고 1249시간 중에 89.1시간으로 7.1%, 특성화고 1285시간 중 84.3시간으로 6.6%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1252시간 중 81.7시간으로 6.5%에 달합니다.

교육과정상에서는 자율고나 특성화고 및 일반계고등학교 예체능 수업시간 비중은 유사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여지며, 예체능 수업 시간을 늘려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수업내용의 실질적 부분을 간과할 수 있다는 맹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즉,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교과과정상의 예체능 수업시간과 실제 수업시간을 타 과목으로 대체수업하는 등의 문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본 의원은 우려스럽습니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자율화 조치로 각 학교마다 수업시간 수를 20%까지 증감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자율화는 상당히 반가운 측면이 있으나, 일면 오히려 예·체능 교육의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데 문제성을 제기합니다.

학교 간 경쟁과 입시위주의 교육시스템 하에서 대학입시에만 집중한 나머지 신체적 발달과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 학생들의 올바른 인격형성은 뒷전이 되어 가고, 이러한 현상은 우리 교육의 총체적 부실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도 2010년도 교육계획에서 반듯한 인성 위에 학력을 향상시키는 기본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경북교육이 인성 위에 학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명품교육으로 거듭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감 권한대행 김화진 부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제기한 사교육비 문제는 한두 가지 정책만으로 해결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학원단속에서부터 공교육 내실화, 대입제도 개선까지 유기적이고 총체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선학교 현장의 책임과 감독을 맡고 있는 도 교육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체능 교육의 부실문제가 결국 입시위주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데, 도내 일반계고뿐만 아니라 자율형사립고 및 특목고의 예·체능 교육의 부실에 대한 도 교육청 차원의 대책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음은 건축물 ‘내진설계 미약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남미 지역의 지진, 아이티에 1월, 칠레에 3월, 멕시코에 4월, 이 지진으로 인해서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는 비극적 사실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지구환경의 변화로 인해 5년 전 인도양에서의 쓰나미, 초속 70km를 넘는 엄청난 돌풍의 위력으로 미국 전역과 중남미 등을 수시로 강타하여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돌풍이 지나간 자리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있는 토네이도 등 자연재앙의 위협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어 그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장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대지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최근 일어난 대지진의 재앙은 분명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자연재해의 위력에 대한 경각심은 두말할 나위 없고, 똑같은 천재지변이라도 준비된 상태와 준비 안 된 상태에서의 피해 규모는 천양지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칠레에서 발생한 지진이 아이티에서 발생한 지진보다 800~1000배 가까이 강력했음에도 피해가 적었던 이유는 잦은 지진에 익숙해진 강한 내성 때문으로 국가 전체가 언제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엄격한 건축 법규와 신속한 재난대응이 지진피해를 줄이는데 한 몫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레와 아이티 사이에서 우리의 갈 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자세 정립을 가다듬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78년 지진 관측 이래 규모 5.0 이상의 강진이 5번 발생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발생한 지진은 총 425건으로 2009년도에는 지진이 무려 49건이나 발생하여 2000년 29건보다 69.0%나 늘어났습니다. 특히 삼면이 바다에 가려있는 상태로서는 정말로 지진 후에 오는 여러 가지 쓰나미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북이 93건으로 21.9%인데 전남은 58건으로 13.6%, 충남은 47건 11.1% 순으로 우리 경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발생빈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내진설계를 한 시설물은 너무나 허술하여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내진설계 미약으로 강도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경북도의 대부분의 학교와 관공서가 건물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경북지역 전체 966개교 중 2009년 말 현재 내진설계가 반영된 학교는 초등학교 38개교 7.66%, 중학교 20개교 7.19%, 고등학교 49개교 25.52%로 전체 107개교에 11.07%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2008년 8월 1일 기준으로 전국 평균 학교시설물 내진설계율 13.7%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학교 수가 아닌 건물별 내진설계 반영률은 7.37%에 그쳐서 사실상 경북도내 학교시설물은 지진에 무방비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경북이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주지의 사실과 도내에 원전시설물까지 있어 타 지역보다 지진에 대한 안전책이 더욱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진재해대책법과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2008년도의 각 시·도 주요 건축물 내진설계 반영 실태조사에서 인근시의 경우 건축구조 기술사 등의 전문가 확보 및 예산확보의 문제로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여전히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지 못하는 안전 불감증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현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이 모든 건물로 확대되고 민간 건물의 내진 보강 시에는 지방세 감면 등 혜택을 준다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추진되고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정부차원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도와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안의 심각성을 정부에 어필하고 보강계획을 세우는 등 지진 대비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권한대행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너무 빠르게 말씀을 드리게 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미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외 광역철도망 동서횡단 철도 및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질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고 답변은 서면으로 이것 또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보고 현재를 통해서 역사를 보는데 그 중심에는 인간이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정신을, 지금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활기찬 경북도를 물려줄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역 철도망 동서횡단철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녹색성장을 이끄는 교통수단으로 철도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로중심의 교통에서 철도 중심으로 중심점이 옮겨지게 되고 철도교통망이 주목받게 되면서 국토해양부는 831km인 도시·광역철도망을 오는 2012년까지 1.3배인 1054km로 늘릴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북지역의 광역전철망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 도시철도본부는 1단계로 구미-대구-경산간(61.85km)을 올해부터 2014년까지 건설할 예정이며, 2단계는 김천-구미간(22.9km) 그리고 경산-밀양간(44.7km)은 교통수요를 감안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밀양의 신국제공항 건설이 확정된다면 이 구간 건설은 필수불가결한 공사로 여겨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경북성장 잠재력은 인구와 물류 그리고 문화의 신속한 접근성으로 초광역경제권이 형성되어야만 더 커질 수 있고 그를 기초로 경북의 웅대한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더욱이 김천혁신도시의 성공과 국토균형개발이란 측면에서 보았을 때 동서횡단철도 조기건설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경북에서 김천은 접근성이 예부터 어느 지역보다 우수하였습니다. 서해안의 교역중심지 군산과 내륙의 경북이 연결된다면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그동안 인적·물적·문화 교류가 활발하지 못한 과거를 청산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초광역경제권 구축 아래 경북의 성장 잠재력은 더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지난 2009년 11월 경북 김천시는 전북 전주시와 새만금-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의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만 동서화합과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상북도 차원에서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에 동서광역철도망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고 그에 따른 모든 후속조치들을 강력히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혁신도시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지역의 성장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도시로서 지역의 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특히 김천혁신도시는 김천 농소면 일원에 사업비 9185억 원을 들여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경북개발공사가 2007년 3월 공사를 착수하여 2012년 12월 말에 완공할 예정이며, 13개 이전 공공기관 중 한국도로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기상통신소, 우정사업조달사무소 등 4개 기관은 이전설계가 들어가 있으며, 한국전력기술(주)은 올해 이전 승인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김천시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따르면 2010년 3월말 현재 부지매입계약을 한 이전 공공기관은 한국도로공사 우정사업조달사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세 곳으로 4월초에 기상통신소와 상반기 중에 한국전력기술(주)이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이며, 나머지 8개 공공기관은 계약 체결을 늦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본 의원이 보기에선 이전 공공기관들이 아직도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각각 사정에 따라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 후 김천혁신도시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김천혁신도시 성공전략이 더욱 치밀하게 수립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경북도 차원에서 정부에 더욱 더 강력하게 조속한 공공기관 이전을 요구하고 이전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해야만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완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경북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전 대상 13개 공공기관의 특성과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집중과 선택을 통한 효율의 극대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혁신도시에 이전할 공공기관이 지난해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서 가족과 함께 이전을 하겠다고 밝힌 직원 수가 아주 낮았던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혁신도시건설의 성패는 교육시설을 비롯한 정주여건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혁신도시 내 초·중·고교가 설립되는 등 기타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이에 대한 경북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김천혁신도시가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첫째, 앞에서 언급한 동서광역철도망 (김천-전주간)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해야 하고,

둘째 김천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정주여건 개선 사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계획과 실행이 되어야만 김천혁신도시는 성공적으로 완공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을 떠나는 정서가 아닌 지역에 정착하여 지역 경제와 문화에 상당한 시너지효과가 창출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경북도 차원에서 김천혁신도시에 대한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을 정부에 건의하고, 성공전략과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0년 4월 8일(목) 제239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장길화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장길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8대 의회 마지막 도정질문이 있는 제23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4년 전 의회에 첫 등원할 때의 설레는 마음과 남다른 각오를 안고 의정활동을 시작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일은 시작할 때의 마음, 초심으로 일한다면 못 이룰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본회의장 발언대에 서는 것도 도의원으로서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어 새삼 지난 4년간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전국에서 하위를 기록한 의원 한 사람당 조례 제정, 본회의의 저조한 출석률 등은 의원 개개인의 남다른 사정, 대선 등으로 인한 당의 공식적인 활동으로 인한 사정도 있겠지만 의회를 바라보는 도민의 마음은 갑갑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친이’니 ‘친박’이니 하는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 도의 균형 발전과 더불어 도민을 위한 선정을 지표삼아 더욱 열심히 뛰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9대 의회에서는 이런 양대 구도가 더욱 뚜렷이 드러나는 의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의회의 인사권 독립, 감사관실 의회 이전, 기술직 출신들의 소외감 등 공직사회의 두터운 벽을 두드리기만 하고 소기의 성과를 올리지도 못한 채 임기를 다한 것에 대해 못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것이 도의원의 한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뜻한 바 목표를 이루 시기를 바라며 새로 구성되는 제9대 의회에서도 항상 도민을 위해 초지일관 초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도정현안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할 말 하는 의회, 힘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하신

이상천 의장님, 새벽을 여는 경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력을 다하신 김관용 도지사님 두 분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도정발전을 위해 정책대안이라 생각하시고 끝까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원자력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는 한국전력 컨소시엄이 아랍에미리트가 발주한 총 47조 원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다는 뜻밖의 반가운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한 바 있습니다. 가뜩이나 외환위기 등으로 잔뜩 움크리고 있던 한 해 끝자락에서 더없이 반가운 낭보였습니다.

금번 수주로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원전 수입국에서 미국과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일본에 이어 명실상부하게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으로 기록하게 되었으며, 특히 이번 수주 규모는 최근 세계시장에서 발주된 플랜트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이 후속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해당 기업 및 연구기관 등과 머리를 맞대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현재 전국에서 가동 중인 원전 20기 가운데 울진 6기, 월성 4기 등 10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울진에 2기, 월성에 2기 등 4기를 건설 중에 있고, 또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가 경주로 이전하고 방폐장도 경주에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기피하는 원전을 경북은 50%나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원자력과 관련된 산업 및 연구시설은 현재 전무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타 지역의 시설 현황을 보면 경남 고리에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이 있고, 전북에는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 대전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핵융합 연구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의 원자력 관련 학과 현황을 보더라도 서울대의 원자력공학과, KAIST에 원자력 및 양성자공학과, 그리고 한양대, 경희대, 조선대 등 총 5개 대학에만 개설되어 있는 반면 한강 이남에서 가장 많은 대학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대구·경북에는 단 한 개 대학에도 없는 실정입니다.

경북은 가동 중인 원전을 절반이나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원전 집적지이고 방사능폐기물처분장,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양성자 가속기 등 3대 국책사업을 기반으로 국가 에너지 사업의 전초기지 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에너지 산업 도약의 호기로 다가온 이번 기회를 타 지자체에 모두 빼앗기는 게 아닌가 하는 큰 우려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는 지금 온실가스 규제, 자원 무기화 등으로 이미 에너지 혁명이 시작되었고 각국에서는 원자력 등 청정연료 확보에 국가 명운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원자력 기술개발과 이에 따른 인력양성이 시급한 상황으로써 도내의 풍부한 교육인프라를 통한 관련 학과와 대학원, 연구소 등의 설립과 또한 원자력과 관련된 연구관련 특화단지 조성도 함께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께서 민선 4기 출범과 동시에 주력 공약사업으로 내세운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이 금번 원전수출의 호기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도청 소관 R&D 연구개발 관련사항과 세 번째 교육청 소관 전문계 고등학교 지원대책과 관련한 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여 주시고 속기록에는 등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둘째, 경북의 R&D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연구개발(R&D)은 최고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북도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 부문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에 R&D를 통한 미래기술 확보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각 지자체가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많은 투자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연구개발의 기술과 경쟁력 확보에 따라 국가와 그 사회의 운명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북 전체에 투자되어 있는 연구개발(R&D)분야 산업은 다른 타 시·도에 비해 기술력과 경쟁력부분에서 많이 뒤쳐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

인력의 외부유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본 의원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2일 R&D분야 경쟁력부분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통계청 등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경북도는 지역 내 총생산 대비(GRDP) R&D 투자 비중 추이는 1999년에 1.95에서 2008년 2.06으로 상승하였으나 종합 경쟁력평가부분에서 평가지수는 16개 시·도 가운데 1위인 전남이 차지한 평가지수가 2.607인데 비하여, 경북은 하위권으로 평가지수 1.145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경북은 전국평균 평가지수 1.480에 훨씬 미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대비 경북의 국가연구개발비 지원비율에서 '06년 1,829억(2.8%), '07년 2,120억(3.07%), '08년 2,502(2.99%)차지하고 있으나 2008년 기준 타시·도 지원비율에서 서울 25.49%, 부산 3.93%, 인천 3.43%, 대전 23.74%, 경기 16.25%, 충남 3.62%, 경남 4.81%등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투자규모, 연구인력, 연구기관, 특허출원 등 R&D투자에 따른 결과물을 평가하는 경우 경북은 R&D분야에서 뒤쳐지고 있어 본 의원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은 또한 R&D분야 투자에 비해 성과물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R&D분야의 연구수행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입니다.

연구수행이 순조롭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R&D연구개발 기능을 주도하는 기업에서는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집중하는 것도 원인이지만, 연구인력의 지방기피 현상과 R&D인력의 외부유출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 예로 2007년 3월을 완공목표로 한 삼성전자의 모바일 구미기술센터가 연구개발사업을 포기하고 지방에 있는 연구인력을 수도권으로 철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모바일 구미기술센터는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등 기업부분의 R&D기반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R&D분야 성공전략은 얼마만큼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인력을 지역에 정주시키느냐가 관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연구인력이 만족할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에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반성해야 하며 '연구하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체질개선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3월 5일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구시청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R&D 특구는 과학비즈니스 벨트와 연계한 대구·경북지역의 특화된 발전 전략으로서 대한민국의 원천, 응용, 산업기술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대구와 광주를 R&D특구로 지정하는 행정적 준비작업에 착수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하면서 R&D 특구가 세워지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중심지이자 첨단 산업단지로 도약하게 될 것임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이 자신감을 갖고 일을 시작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개발(R&D)특구가 시행되고, 대구·경북이 연구·기술 분야에서 허브가 된다면 연구분야 기업들의 설립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북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하여 또 하나의 경사는 10일 포항 포스텍에 세계 최고 기초과학연구소인 독일 막스 플랑크 한국연구소 유치가 확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동안 연구소 유치에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 도민을 대신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R&D분야 유치 전략을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지역의 강점과 장점을 가진 산업과 연계된 신성장동력을 찾아 지원 및 규제를 완화하며 기업과 R&D가 융·복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수적인 바, 이와 관련하여 R&D분야 투자를 지역의 전략산업 발전계획과 지역인재를 키우는 기반을 강화, 연구인력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지역의 전략이 대구·경북 R&D특구 지정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대책과 계획이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계고등학교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계고등학교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졸업 후 바로 지역기업체에 취직해서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사회인으로서 성장해 가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그 설립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연해 있는 학력지상주의 풍토와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 등으로 인문계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전문계고교생들까지 취업보다는 진학을 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경북도내 전문계 고등학교는 2010년 현재 농업계 1개교, 공업계 22개교, 상업계 20개교, 가사·실업계 5개교, 종합고 22개교로 총 71개교에 학생 수는 2만 9207명에 달합니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경북도내 전문계고 출신 진로현황은 2007년도에는 취업률 31.6%, 진학률 66.1%, 2008년도에는 취업률 25.9%, 진학률 69%, 2009년도에는 취업률 22.8%, 진학률 68.7%로 점점 더 취업률은 감소하고, 진학률이 증가하여 7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문계고의 설립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계고 활성화 지원 예산현황을 보면,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전문계고로 구분하여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전문계고의 경우 2008년 208억 2800만 원, 2009년도에는 118억 1200만 원으로 2008년 대비 56%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취업자 대비 1인당 교육비가 전국 평균 국·공립의 경우 170만 6000원, 사립 600만 3000원인데 비해, 경북의 경우 국·공립 186만 5000원, 사립 651만 9000원으로 전국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교육비지출 대비 취업률이 상당히 저조하여 전문계고 활성화 사업이 지극히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 전문계고의 설립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경북의 전문계 고등학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화, 특성화 교육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인지 또한 산업현장에 맞는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의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문계고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취업과 진학의 진로방향이 완전히 역전된 이러한 현상은 결국 도교육청의 전문계고 특성화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산업 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과의 산학협약 체결과 산학협력교사의 단기임용 그리고 신기술 연수지원 등 보다 공격적이고 탄력적인 전문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계고등학교와의 차별성이 없이 입시위주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어 교육비 지출이 과다하게 되고 더 나아가

우수한 기능인력을 산업에 제대로 접목시키지 못하여 결국 국가와 지역의 막대한 손실로 귀결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와 반면에 전북 고창 강호항공고, 부안 줄포자동차고, 남원 경마축산고 등 정원을 못 채우던 시골학교들이 특성화고 전환 이후 전국에서 학생들이 몰려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의 성공사례는 산업체의 수요를 겨냥한 특성화된 집중 교육만이 실업 교육의 살길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계 고등학교의 취업향상 방안과 운영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 전면적인 대책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 지역의 전략산업과 성장동력 산업 등과 연계한 인력양성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0년 4월 8일(목) 제239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이상용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양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상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도정현안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하니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이라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 지원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도는 민선 4기 출범인 2006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3년 2개월 동안 국내기업 115개, 9조 7675억 원과 해외기업 13개, 1조 3760억 원 등 모두 128개 기업과 11조 1435억 원 상당의 투자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기업유치의 최대 성과는 우리 경북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촉매가 되어야 합니다. 단지 유치성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결실을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유치의 성과가 생산성 증대와 지역의 고용창출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존 유치된 기업을 잘 관리해 나가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외지 기업유치 실적만 발표될 뿐 지역기여도에 대한 발표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 경북도에서 유치한 기업들의 유지관리 현황은 제대로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칠곡군 석적읍에 위치한 외국인 투자회사인 I회사는 지난 5월 폴리에스테르 원사 생산업체인 A합섬 회사를 인수하여 5개월 후 제품생산을 목표로 16억 원을 투자하여 모든 설비작업을 마쳤으나 전기 공급이 안 되어서 거의 9개월가량 공장가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가 겨우 법원의 전력공급 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이제야 정상적인 생산라인 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지역에 진출한 기업들이 원활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만전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사님 취임 이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오셨던 만큼 기업유치 이후에도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들 기업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지속적 사후관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즉,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유치에 혈안이 되어 뛰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경북도만의 신뢰를 쌓아주고 스스로 기업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묻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향후 우리 도에 유치한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대책 및 특히, 외국인 회사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받기반 정비사업과 지적과 전담부서 설치, 농업예산 현황, 학력평가 결과, 북부지역 온천 과열경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마는 질문과 답변을 서면으로 대신하고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받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 농민들의 고령화, FTA로 인한 농산물 수입개방화 시대를 맞아 외국의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와 농산물의 가격 하락 등 농촌은 그야말로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경북도에서는 1994년도부터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개발여건이 양호한 채소류 주산지 등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시설 및 경작로, 밭 경지정리 등 받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그 추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상당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2008년까지 전체 사업대상 2만 4920ha에 대해 2만 51ha가 정비되어 총 80.46%가 정비되었으며, 전남도의 경우에도 2009년 현재 총 개발대상 2만 1360ha 중 1만 7204ha가 정비되어 80.54%가 정비되어 받기반 정비사업의 추진 비율은 전체의 80%이상을 초과하고 있으며, 더욱 큰 틀에서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적극적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 현재 경북도는 1994년도부터 추진해온 받기반 정비사업의 경우 총 개발대상 4만 3009ha 중 2009년도까지 1만 6207ha가 정비되어 38%정도밖에는 추진되지 않고 있어 타 시·도와 상당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시·군별 받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상당합니다. 2009년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성주군의 경우 개발대상 180ha중 176ha가 정비되어 98%의 실적을 보이고, 울진 94%, 문경 85%, 경산 78% 등 도내 시·군 중 추진율이 50%를 상회하는 지역이 23개 시·군 중 10개 시·군에 달하고 있으나 나머지 지역의 경우 추진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특히 영양군의 경우에는 총 개발대상 3606ha중 현재까지 837ha만 정비되어 25%의 추진율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비와 도비를 합하여 영농기반 구축사업지원 현황에서도 받기반 정비사업 예산은 2007년 267억, 2008년 183억, 2009년 149억, 2010년 97억으로 예산액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어 농촌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에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쌀 소비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쌀 과잉에 비해 밭작물 곡물들은 5%의 자급률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농가소득 증대의 새로운 활로개척을 위하여 밭 중심의 농업정책으로 선회하여 농촌의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지역 농민들의 다양한 소득기반을 마련하고자 각 시·도에서는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경북도 농정정책에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농도 경북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도차원에서 농민들에게 제대로

된 농사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받기반 정비사업의 적극적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받기반 정비사업이 타 시·도에 비하여 사업추진이 미흡한 사유와 받기반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도지사의 견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적전담부서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의 새로운 동력인 공간정보산업과 3차원 지적정보통합시스템, 디지털 지적 시대로의 전환으로 주민들의 욕구는 더욱 다양화되고 있고 토지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 지적업무 수행에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업무는 불일치한 지적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적 재조사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 등 기존의 아날로그 측량시스템은 첨단 디지털 측량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업무의 중요성과 전문성 확대에 인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정부는 100대 과제 중 주요과제인 국가공간정부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2008년 2월 행정안전부 소속 지적업무를 전문 부서인 국토해양부로 이관하면서 국토정보정책과, 공간정보기획과, 지적기획과, 국가공간정보센터의 4개부서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12월 현재,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지적업무 전담부서(과)를 설치, 운영 중인 시·도는 모두 13개 지역이며 서울 등 7개 전체 광역시와 경기, 강원, 충청북, 전남, 경남 등 6개 도가 지적업무 전담부서를 설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도는 오히려 지적업무 전담부서가 없어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경북도의 지적업무 처리실적은 전 국토 면적 중 도 단위 전국 1위, 연간 측량검사 전국 2위, 토지이동처리 전국 3위, 지적민원 전국 3위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연간 면적 1만 9028km², 연간토지이용 27만 8000필지로 연간 토지이동 필지 수 전국 4위로 계(係)단위 조직으로 업무량 전국 2~3위를 처리하고 있는 등 어느 기타 도보다 폭주하고 있는 지적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조사한바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의 경우 1999년 지적과가 주택과에 흡수 통합된 이후 지금까지 건축지적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도내 일선 시·군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23개 시·군 중 경주, 구미, 경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에서 전담부서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본 의원이 지난 제23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도 지적과 부활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만 이 후 경북도 차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지적행정은 주민과의 최접점 업무인 만큼 도민중심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지적전담 부서가 반드시 부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적과 부활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경북도 차원에서 지적업무 전담부서를 설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둘째, 향후 폭주하는 지적업무 및 민원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도지사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예산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은 이제 더 이상 ‘전통, 재래식’ 같은 수식어가 따라 붙는 1차 산업이 아니라 생명과학과 연계된 최첨단 산업으로 탈바꿈하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산업인 농업의 적정 예산확보로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북도의 농업예산은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 본 의원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경북도의 최근 3년간 농업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총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이 2008년 11.81%, 2009년 11.05%, 2010년 10.79%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10년도 총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이 전국 평균은 14.7%이며, 이에 반해 우리도와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는 전남도의 경우에는 농업예산이 20.9%로 전국 최고수준으로 농업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의 농업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농도 경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농도 경북이 오히려 도내 농민들의 꿈을 깨뜨리는 것으로 가뜩이나 농업이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에서 경북도의 이러한 농업분야 경시현상에 본 의원은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 농업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육성정책 없이는 도산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식량주권의 산실인 농업을 포기하는 설익은 정책이 추진되어 우리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가는데 도차원에서 적극 나서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진정 농업을 살리고 농민을 살릴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농업이 미래 성장동력의 주축이 되어야 합니다. 농업에서 미래의 희망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의 농업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빈사상태에 빠져 있는 농업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방 온천 과열경쟁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각 지자체는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치열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발전에서 소외되어 온 경북 북부지역의 시·군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혼신의 노력을 더욱더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발전전략 중 하나로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온천개발을 상품화하여 인근 관광지와 연계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온천개발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만들어 내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2009년 12월 현재 북부지역 온천 현황을 살펴보면, 안동의 경우, 허가된 것 10개중 운영 5곳, 미사용 5곳, 영주 허가 된 것 11개중 운영 4개, 미사용 7개, 문경 허가 된 것 12개중 12곳 운영, 청송 허가 된 것 6개중 2개 사용, 미사용 4개 등 총 이들 북부지역의 47개 허가된 것 중 27개만 운영하고 미사용하는 곳은 20곳이나 되어 전체의 42.5%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의 타당성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온천 개발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로는 문경시, 예천군, 영주시, 안동시 등 4곳에 이르는 바, 이 경우에도 이들 인접하고 있는 지자체들 간 온천과열경쟁의 양상을 보이며 민간업자와의 마찰과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북부 지방의 각 지자체간 과도한 온천경쟁은 세수입의 확보보다는 오히려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고 특히 북부지역에 47개의 온천허가 중 27곳만 운영하고 20곳은 운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결국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적합성, 허가기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온천지정 시에 주위 환경과 적합성, 온천개발로 인한 수질악화 등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후 지정하고 난개발 방지 및 오·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허가기준 강화 및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온천간의 허위·과장 광고 및 관리 실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경북도가 과열경쟁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간 중재를 하여 지역의 관광자원과 온천 시설 및 기능, 프로그램 등을 다양화, 차별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서로 협력하는 다양한 형태의 온천과 관광자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북부지역 지자체간 온천을 비롯하여 유교문화 등 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차별화·다양화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이렇게 기초단체간 온천 과다경쟁 되는 분야가 있다면 조속하게 경북도가 나서서 조정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초단체가 협력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일정한 대책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력평가결과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은 인재육성과 불과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인재육성은 지역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3일에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년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경북도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개 교과 전체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중3의 경우 5.2%로 전국에서 네 번째이며, 고등학교 1학년은 3.5%로 세 번째 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초6의 경우 강원, 충북, 대전이 0.9%로 전국 1위를 차지하였으나 경북의 경우에는 11위를 기록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보통이상 학력 비율 역시

전국 11위에 그쳐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비중은 높고 오히려 보통이상의 학생 수는 타 시·도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 비해 학력평가 향상도가 우수한 교육청으로 초6은 충북과 제주, 중3은 충북과 경기, 경남도가, 고1은 충남과 경남으로 나타나 실제 경북도의 학업성취도 향상도 역시 타 시·도에 비해 미흡한 결과를 볼 때 본 의원은 경북교육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을 현재의 1/3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학습부진학생 제로화 학교 공모제를 도입하고 각 학교를 방문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기초학력 컨설팅단을 운영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우리 경북도는 인재의 산실이었습니다. 그러한 명성은 어디로 가고 이제는 타 시·도의 우수 사례를 본받아야 하는 암담한 현실에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학력평가에서도 경북도가 학력평가 성적이 낮게 나온 것도 정책적 이유가 있을 것이며 또한 이번 학력평가의 결과에서도 성적이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도내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한 새로운 정책적 모색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상기의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VII. 5분 자유발언

□ 2010년 3월 25일(목) 제239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이상호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경주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부의장 직함을 갖고 있으면서도 5분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의 다급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난 2009년 7월 제23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동료 의원이었던 박병훈 전 도의원과 함께 경주 방폐장 국책지원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방폐장 지원사업의 하나인 한수원 본사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비장한 각오로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5년 11월, 무려 20년 가까이 표류하던 국가적 숙원사업인 핵폐기물 처분장을 경상북도와 경주시민들의 피와 땀과 희생으로 합심해서 유치한 것은 유치지역에 대한 철저한 지원의 약속을 중앙정부가 했기 때문에 믿고 오직 침체일로에 있는 지역경제만이라도 살리고자 한 경주시민들의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방폐장 유치 이후에 중앙정부와 한수원이 약속한 사업들이 아직도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것도 모자라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국내 원전산업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다는 명분 하에서 한수원 본사 이전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구조개편 차원에서 한전과 한국수력 원자력의 통합설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와 한전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오는 6월부터 원전수직계열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논의를 거쳐서 통합에 나선다는 방침으로 일부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이 통상적으로 연구용역의 용역발주자의 의도에 따라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많고, 한수원 본사 이전 완료 시점이 2014년이기에 얼마든지 그동안에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대로 두고 있을 경우 한수원 본사의 경주이전은 물거품으로 변할 우려가 있으며, 이전한다 하더라도 본사 이전이 아닌 부분이전으로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폐장 유치를 계기로 경상북도의 획기적인 발전과 경주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였던,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에 차 있던 우리 경북도민과 경주시민들은 이번 한전과 한수원의 통합설이 나오자마자 또 한번의 국가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의거해서 한수원 본사는 방폐장 유치지역인 경주지역으로 이전하도록 법률로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3백만 경북도민과 30만 경주시민들 앞에서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한전과 한수원의 통합설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책임자가 조속한 시일 내에 깨끗하게 해명하고, 당초 약속하고 계획한 바와 같이 한수원 본사의 경주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련 사업들도 한 치의 오차 없이 완료되어 나가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으므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불미스런 일들은 모두 한전과 한수원 측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에 따른 책임들을 짊어져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또한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공무원들이 한수원 본사의 경주 이전을 비롯한 방폐장 유치에 따른 지원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확실한 소신을 갖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한수원 본사 이전 및 관련사업들이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시 한 번 철저한 점검은 물론 관련 사업들이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0년 3월 31일(수) 제239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박기진 의원(농수산·교육환경위원회) ◎

성주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박기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관련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 의원과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김지수 의원과 공동으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3월 24일까지 일조량은 총 227시간으로 전년대비 63시간, 평년대비 무려 101시간이나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올해 3월은 지난 1909년 기상청 일조시간 측정 이래 일조량이 가장 낮은 최악의 햇볕없는 3월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도내 시설채소의 생육부진, 생산량 및 품질 저하, 병해증가로 이어져 재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의 시설채소 농가들은 착과 및 과실대비 불량 등 생육이 전년도 대비 2~3주정도 지연되고, 기형과 발생증가, 당도저하, 전년대비 30~40%의 생산량 감소, 그리고 무름병, 잣빛 곰팡이병, 덩굴 마름병 등 병해발생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 도내 농민들은 엄청난 손실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참외 생산량의 70%를 점하고 있는 성주군의 피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올해 기상이 고르지 못하면서 개화와 착과·생육지연으로 물찬 참외 즉, 발효과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초기 수확기인 2월 1일부터 3월 25일까지 발생한 발효과만 443톤으로 지난해 보다 6배나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올해 성주 참외의 전체 매출은 지난해 대비 무려 500억 원~700억 원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도차원에서도 성주·고령·칠곡 등 현지확인을 비롯하여 피해에 대해 농식품부 방문을 통한 피해상황 재해인정 건의 등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농식품부에서도 지난 3월 25일 장태평 장관

께서 피해가 심각한 성주군, 고령군지역 피해현장을 방문한 후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에는 전례없던 이상기후로 우리 농민들의 땀과 노력들이 제대로 결실을 맺기도 전에 병해가 발생하고 과실이 말라죽어가고 이로 인해 농민들의 경제적인 큰 손실과 더불어 이 피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 한치 앞을 내다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농어업재해대책법상으로는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업재해 인정기준이 없어 이번 성주군을 비롯하여 막대한 시설채소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토록 하는 노력이 그 무엇보다도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조속히 농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차제에 시설작물의 재해보험 확대 등 제도적 미비점도 함께 보완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정부의 농업재해 인정 및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생육 촉진 을 위한 농약대 등 제 경비, 농가경영안정 특별지원금에 대하여 예비비의 즉각 집행 등 더욱 발빠른 대처가 함께 병행되어야만 시름에 빠져 있는 우리 농민들의 고통이 하루속히 덜어질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이상기후에 따른 도내 피해농민들의 눈물과 시름을 헤아리시고 도차원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본 의원과 김지수 의원님의 공동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0년 3월 31일(수) 제239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김영기의원(교육환경위원회) ◎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산색이 아름답고 물이 맑은 청송 출신 김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김화진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제23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보도된 바와 같이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 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청송군민의 한 사람이자 경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17일 법무부는 청송교도소 일부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그곳에 성폭력 등 흉악범을 집중 수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이귀남 법무부장관도 청송 교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청송교도소에 성폭력, 살인 등 흉악범들을 집중 수용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청송교도소에는 3개의 교도소와 직업훈련 교도소가 있는데 직업훈련 교도소는 서울 영등포교도소로 이전하고, 서울, 부산구치소와 대전, 대구, 광주교도소에 분산되어 있는 전국 57명의 사형수들을 모두 청송한 곳에 모아서 특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로부터 청송은 산자수명(山紫水明)이라고 하여 산색이 아름답고 물이 맑으며, 인심이 순후하고 자연이 가장 잘 보존된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장을 설치하는 것은 지명이나 주변 여건으로 볼 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처사입니다.

삼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나머지 한쪽은 낙동강 지류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천혜의 요새를 방불케 한다는 지형 하나만으로 전국의 모든 흉악범들을 청송으로 헤쳐 모여 하는 것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청송교도소의 이미지는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탈옥수 신창원, 조양은 등을 비롯하여 최근 어린이 성폭행범 조두순 등 중범죄자들이 수용되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지역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가 행패를 부리거나 사고를 치면 무조건 청송교도소로 보내고 있을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에는 크고 작은 섬들이 3000개 이상이 있습니다. 차라리 천혜의 요새를 찾고자 한다면 흉악범들을 아예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격리된 최극단에 있는 섬으로 격리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사형집행시설을 청송에 신설하여 흉악범과 성범죄자가 집결하게 되면 지금까지 힘들게 가꾸어 온 청송의 브랜드 가치는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릴 것이고 사람은 살 수 없고 흉악범만 수용하는 지역으로 세간에 인식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산업 육성과 친환경농산물 판매에도 경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각인되어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뻔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영남의 소금강으로 불리는 국립공원 주왕산을 비롯하여 향토문화 유적이 산재해 있는 청송의 이미지에 걸맞게 사형집행시설 설치를 전면 백지화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청송교도소의 명칭도 경상북도 제1교도소, 제2교도소, 제3교도소 또는 옛 지명을 따서 “양정교도소”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송군과 경상북도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막고 청송을 나쁜 사람들만 있는 열등지역으로 인식되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청송교도소 사형집행시설 설치를 전면 취소하고 청송군민과 3백만 경상북도민들에게 머리 숙여 공식 사죄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법무부장관의 구체적인 반성과 사죄가 있을 때까지 3백만 경북도민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강구하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아울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이 점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 록

- ☐ 조례안 : 20건
- ☐ 예산안 : 2건
- ☐ 동의안 : 3건
- ☐ 기타안 : 2건

□ 조례안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학자금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유보)
- 경상북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시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 경상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민물고기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
-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안
-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3월 3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투자통상국) (생략) 1~2. (생략) <u>3. 고용정책의 수립시행 및 실업대책 추진</u> 4~12. (생략)	제8조(투자통상국)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u><삭 제></u> 4~12.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3월 3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재정보전금의 재원) ① 재정보전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 경상북도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 말의 경상북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해당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② 일반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도세 징수 실적”을 “도세 징수 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재정보전금의 재원) ①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개발세중 원자력발전분을 제외한다)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생략)	제4조(재정보전금의 재원) ①재정보전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 경상북도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 말의 경상북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해당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②(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6조(재정보전금의 산정·배분방법) ① 일반재정보전금의 산정방법은 일반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근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도 전체의 인구수에서 당해 시·군의 인구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도 전체의 <u>도세 징수 실적</u> 에서 당해 시·군의 도세 징수실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나머지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가 1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당해 시·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②~⑤ (생략)	제6조(재정보전금의 산정·배분방법) ① <u>도세 징수 실적</u> <u>(지방소비세는제외한다)</u> ②~⑤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개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3월 3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개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개발공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1,600억원"을 "5,000억원"으로 한다.

제5조 제5항중 "3,200만주"를 "10,000만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u>1,600억원</u>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 ③ (생략) 제5조(주식의 발행등) ① ~ ④ (생략) ⑤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u>3,200만주</u>로 한다	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u>5,000억원</u>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주식의 발행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u>10,000만주</u>로 한다

경상북도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3월 3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을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또는 소송대리 위임받은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1호 및 제2호 중 “100분의 70이상”을 각각 “100분의 60이상”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각호의 “1인당”을 “1건당”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200,000원 이내”를 각각 “600,000원 이내”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의 “50,000원 이내”를 “200,000원 이내”로 하고, 동조 동항 제3호의 “50,000원 이내”를 “100,000원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u>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u>.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도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u>100분의 70이상</u>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을 경우 2. 도 또는 도지사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u>100분의 70이상</u>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생략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 <u>200,000원</u>이내 <개정'88. 4. 29, '89. 3. 8, '02. 6. 3>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 <u>200,000원</u>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u>50,000원</u> 이내 <개정'88. 4. 29, '89. 3. 8, '02. 6. 3>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u>50,000원</u> 이내<개정'88. 4. 29, '02. 6. 3> ② 생략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u>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또는 소송대리 위임받은 공무원</u>. ... 1. <u>100분의 60이상</u>..... 2. <u>100분의 60이상</u>... ② 현행과 같음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1. <u>1건당 : 600,000원</u>이내 2. <u>1건당 : 600,000원</u> 이내 <u>1건당 : 200,000원</u> 이내 3. <u>1건당 : 100,000원</u> 이내 ②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3월 3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 본청에 다음의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1. 국무총리 표창이상 훈격의 정부포상 및 모범공무원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해 제1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실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2. 도지사 표창 및 장관급 상당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해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도 4급 과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의2 제2항을 삭제하고 제10조의2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 2(공적심사위원회)①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제10조의 2(공적심사위원회)①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해 도 본청에 다음의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1. 국무총리 표창이상 훈격의 정부포상 및 모범공무원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해 제1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실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2. 도지사 표창 및 장관급 상당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해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도 4급 과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은 실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삭제>
③(생략)	②(현행 제3항과 같음)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3월 3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소비세

제1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소비세는 도지사가 직접 부과·징수한다.

제2장에 제5절(제58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지방소비세

제58조2(지방소비세 납입확인) ① 도지사는 매월 법 제159조의7제2항에 따라 납입관리자로부터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납입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00조 본문 중 “주민세균등할”을 “주민세 균등분”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3호의 과세표준란 중 “주민세균등할”을 “주민세 균등분”으로 한다.

제102조제2항 중 “주민세균등할”을 “주민세 균등분”으로 한다.

조례 제3109호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항 중 “2009년도”를 “2009년도 및 2010년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비세 적용례) 제3조제2항제5호, 제10조제1항 단서 및 제2장 제5절(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3조(세목) ① (생략)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u><신설></u>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 도지사는 도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당해 과세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u><단서 신설></u> <u><신설></u> <u><신설></u>	제3조(세목)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u>5. 지방소비세</u>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 ----- ----- ----- -----. <u>다만, 지방소비세는 도지사가 직접 부과·징수한다.</u> <u>제5절 지방소비세</u> <u>제58조2(지방소비세 납입확인)</u> ① <u>도지사는 매월 법 제159조의7제2항에 따라 납입관리자로부터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u> ② <u>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납입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u>	○ 지방세법 개정으로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세목 신설 ● 지방세법(법률 제9924호, 2010.1.1 공포·시행) ○ 지방소비세 신설로 그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지방소비세 신설로 그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10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생략)

구분	과세표준	세율
1.~2.	(생 략)	(생 략)
3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u>주민</u> <u>세균등할</u> 의 세액	(생 략)
4.~6.	(생 략)	(생 략)

② 시장·군수가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균등할, 자동차세 및 재산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한다

제100조(납세의무자) -----

----- 주민세 균등분

① (현행과 같음)

구분	과세표준	세율
1.~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 ----- <u>주민</u> <u>세 균등분</u> -----	(현행과 같음)
4.~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② _____

- 주민세 균등분-----

○ 2010. 1. 1. 지방세법
개정으로 용어 변경

○ 2010. 1. 1. 지방세법
개정으로 용어 변경

○ 2010. 1. 1. 지방세법
개정으로 용어 변경

부 칙<2009. 6.11. 경 상 북 도 세 조 례3109호> ① (생 략) ② (적용기한) 제6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u>2009년도</u> 소방공동 시설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 하여 적용한다.	부 칙<2009. 6.11. 경 상 북 도 세 조 례3109호> ① (현행과 같음) ② (적용기한) ----- ----- <u>2009년도 및 2010년도</u>----- ----- -----.	○ 지방세법 개정('09.2.6) 에 따른 과표현실화로 세액이 급등하지 않도록 '09년도에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소방공동시설세 세율인하 기간을 1년 연장
--	---	---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3월 3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1(중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 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②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공무원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①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및 가스도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사업허가를 받기 전 6월 이내에 취득한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32조제2항 중 “입주하는 기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규정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각호의 사업”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에서 정하는 투자를 할 경우 해당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를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이 폐업한 경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4항, 제32조제2항 및 제3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 특례) 제13조의1 개정규정은 등록세의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신설〉	제13조의1(중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②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 변경으로 2006.1.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는 • 지방세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 등록세는 '09.12.31까지 중전화물차 세율적용 • 지방교육세는 '09.12.31까지 미부과 • 지방세법 부칙 (법률 제7843호, 2005.12.31) 〈개정안〉 ○ 행정안전부 감면조례 표준안으로 허가한 사항에 근거하여 조문 신설 • '10.12.31일까지 적용 ○ 대상차량 : 화물적재 공간 2m³미만 밴형 화물차
제15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5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제32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규정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단, 사업개시일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 취득일)부터 15년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 (생략) 1. (생략) 2.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3. ~ 4. (생략)	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32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투자를 할 경우 해당 사업을....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이 폐업한 경우 3. ~ 4. (현행과 같음)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921호, '10.1.1 공포)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
--	--	--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3월 3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제7조 각호에 따른 제공계획 및 평가를 포함하여,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를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 제9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생활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원) ①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왔거나, 시설을 나오고자 하는 욕구가 파악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긴급을 요하는 시설 퇴소 희망자가 있을 때에는 임시 주거지와 활동 보조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하며, 초기 생활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하여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생활, 인권, 성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주거 및 주택개조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자립생활가정, 전세주택, 공공임대주택, 주택개조 등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임시 및 중장기 주거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상북도가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다가구 및 부도매입 임대주택)중 일부를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5인이하의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장애인이 세대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안될 경우, 이 기간에 한하여 자립생활가정을 제공토록 하되, 소규모로 운영되도록 한다.

⑤ 도지사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가 주택 및 임대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를 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저소득 장애인이 공공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의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을 지불하기 어려울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주거지원 및 주택개조 등에 필요한 절차와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를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로 하고, 제15조중 제2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과 단체의 활동경력이 6년이상으로 인정되는 자 또는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으로 1호부터 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5조 (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①(생략) ②장애인 자립생활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에 <u>보고하여야 한다.</u> ③(생략)	제5조(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①(좌동) ② 장애인 자립생활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제7조 각호에 따른 제공계획 및 평가를 포함하여,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에 <u>보고하여야 한다.</u> ③(좌동)	
(신설)	제9조(생활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원) ①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왔거나, 시설을 나오고자 하는 욕구가 파악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긴급을 요하는 시설 퇴소 희망자가 있을 때에는 임시 주거지와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하며, 초기 생활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하여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생활, 인권, 성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비고
(신설)	제10조(주거 및 주택개조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공동생활 가정, 자립생활가정, 전세주택, 공공임대주택, 주택개조 등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임시 및 중장기 주거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상북도가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다가구 및 부도매입 임대주택)중 일부를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5인이하의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장애인이 세대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안될 경우, 이 기간에 한하여 자립생활가정을 제공토록 하되, 소규모로 운영되도록 한다. ⑤ 도지사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가 주택 및 임대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를 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비고
	⑥ 도지사는 저소득 장애인이 공공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의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을 지불하기 어려울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주거지원 및 주택개조 등에 필요한 절차와 지원조건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제3장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제9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지원)(생략)	제11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지원)(좌동)	
제10조 (센터의 사업)(생략)	제12조 (센터의 사업)(좌동)	
제11조 (활동보조인 신청 등)(생략)	제13조 (활동보조인 신청 등)(좌동)	
제12조 (업무의 위탁)(생략)	제14조 (업무의 위탁)(좌동)	
제13조(운영기준) ①(생략) ②(생략) 1.~4. (생략) 5. (신설)	제15조(운영기준) ①(좌동) ②(좌동) 1.~4.(좌동) 5. 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과 단체의 활동경력이 6년이상으로 인정되는 자 또는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으로 1호부터 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현행	개정안	비고
<u>제14조</u> (운영위원회의 구성)(생략)	<u>제16조</u> (운영위원회의 구성)(좌동)	
<u>제15조</u> (위원회 운영)(생략)	<u>제17조</u> (위원회 운영)(좌동)	
제4장 예산 <u>제16조</u> (예산의 지원)(생략)	제4장 예산 <u>제18조</u> (예산의 지원)(좌동)	
<u>제17조</u> (보조금의 반환)(생략)	<u>제19조</u> (보조금의 반환)(좌동)	
<u>제18조</u> (보조금의 정산 등)(생략)	<u>제20조</u> (보조금의 정산 등)(좌동)	
제5장 보칙 <u>제19조</u> (사업의 우선)(생략)	제5장 보칙 <u>제21조</u> (사업의 우선)(좌동)	
<u>제20조</u> (사업의 평가)(생략)	<u>제22조</u> (사업의 평가)(좌동)	
<u>제21조</u> (시행규칙)(생략)	<u>제23조</u> (시행규칙)(좌동)	
(신설)	부칙 <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3월 25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포항시의회 의원 선거구 및 경산시의회 의원 선거구의 선거구명과 의원정수 및 선거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선거구명	의원정수	선거구역
포항시 의원정수 32인(비례대표 4, 지역구 28)		
포항시“가”선거구	2	홍해읍
포항시“나”선거구	3	신광면, 청하면, 송라면, 기계면, 죽장면, 기북면
포항시“다”선거구	2	양학동, 용흥동
포항시“라”선거구	3	중앙동, 죽도동, 두호동
포항시“마”선거구	2	우창동, 환여동
포항시“바”선거구	2	장량동
포항시“사”선거구	2	송도동, 청림동, 제철동
포항시“아”선거구	3	상대동, 해도동
포항시“자”선거구	2	효곡동, 대이동
포항시“차”선거구	2	연일읍, 대송면
포항시“카”선거구	2	오천읍
포항시“타”선거구	3	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
경산시 의원정수 15인(비례대표 2, 지역구 13)		
경산시“가”선거구	2	서부1동, 중방동
경산시“나”선거구	2	서부2동, 북부동
경산시“다”선거구	2	하양읍, 와촌면
경산시“라”선거구	3	진량읍, 압량면
경산시“마”선거구	2	자인면, 용성면, 동부동
경산시“바”선거구	2	남산면, 남천면, 중앙동, 남부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의원은 임기만료일 까지 종전 조례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한다.

경상북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4월 8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육체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3. “건강증진”이란 도민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자신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건강증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건강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 또는 경영자, 그 밖에 관리자는 사업 활동을 하면서 사업장 종사자들의 업무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건강도시는 주민을 위한 음식·물·주거·환경·안전 등에 대한 도민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도록 한다.

② 건강도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리적 환경을 조성한다.

③ 건강도시는 주민의 삶과 건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④ 건강도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및 자연지리적 유산 등을 안정적으로 보존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유지한다.

⑤ 건강도시는 계층과 부문간 상호 협력과 통합적인 지역공동체를 추진한다.

⑥ 건강도시는 주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과 경험 및 기회에 공평하게 접근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4년마다 건강도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
2.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3.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범사업 등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사업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국제기구, 국가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건강도시 네트워크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도민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건강도시 사업) 도지사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깨끗하고 안전한 기본적인 욕구 충족 및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
2. 주민의 삶과 건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3. 지역의 역사와 문화 및 자연지리적 유산 보존사업
4. 계층간 부문간 상호 협력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사회통합 사업
5. 지역의 사회적 물리적 자원에 대한 공평한 접근 및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
6. 건강도시 조성과 확산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7. 그 밖의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6조의 건강도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시·군 및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건강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
2. 건강도시 사업의 방향 제시 및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기관·단체, 개인 등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안전과 관련이 있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 건강 및 질병 관련 전문가
2. 주거 및 도시계획 전문가
3. 안전 및 사회통합 관련 전문가
4. 문화 및 자연유산 관련 전문가
5.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6. 제6조의 건강도시 사업관련 도 정책 담당 국장
7. 그 밖의 건강도시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관계 공무원은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공공보건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지원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와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 본인의 사임요청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질병으로 위원회 참석 및 활동이 어렵게 된 때
2. 장기간 외국체류 등으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도지사 등의 책임 등) ① <생략> ② 도민은 자신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u>경상북도</u>가 설치·관리하는 건강증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건강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u>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사업 활동을 하면서 사업장 종사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좌동> ② 도민은 자신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u>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u>가 설치·관리하는 건강증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건강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u>사업주 또는 경영자, 그 밖의 관리자는 사업 활동을 하면서 사업장 종사자들의 업무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제4조(기본원칙) ① 도지사는 도민의 <u>음식·물·주거·환경·안전 등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 되도록 노력한다.</u> ② 도지사는 도내 시·군의 환경을 건강하고 친환경적으로 보존하고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의 공동체가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자의 역할을 한다. ④ 도지사는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도시 여건이 이루어지도록 시·군의 건강도시 사업을 지원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건강도시는 주민을 위한 <u>음식·물·주거·환경·안전 등에 대한 도민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도록 한다.</u> ② 건강도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리적 환경을 조성한다. ③ 건강도시는 주민의 삶과 건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④ 건강도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및 자연지리적 유산 등을 안정적으로 보존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유지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⑤ 도지사는 모든 도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및 경험, 보건환경 등에 공평하게 접근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준 높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⑤ 건강도시는 계층과 부문간 상호 협력과 통합적인 지역공동체를 추진한다. ⑥ 건강도시는 주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과 경험 및 기회에 공평하게 접근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u>건강도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② <생략> 1.~5. <생략>	제5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u>4년마다 건강도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② <좌동> 1.~5. <좌동>
제6조(도민참여 및 의견제시) ① 모든 도민은 자신들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건강도시와 관련한 주요사업의 추진과정에 <u>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제6조(건강도시 사업) 도지사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깨끗하고 안전한 기본적인 욕구 충족 및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 2. 주민의 삶과 건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3. 지역의 역사와 문화 및 자연지리적 유산 보존사업 4. 계층간 부문간 상호 협력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사회통합 사업 5. 지역의 사회적 물리적 자원에 대한 공평한 접근 및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 6. 건강도시 조성 과 확산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7. 그 밖의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시·군 및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6조의 건강도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시·군 및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 1. 국민건강 증진 및 질병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경상북도의 도민 건강증진 정책을 담당하는 국장 3.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1명 4. 건강도시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신설> <신설> ②~④ <생략>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좌동> 1. 지역 건강 및 질병 관련 전문가 2. 주거 및 도시계획 전문가 3. 안전 및 사회통합 관련 전문가 4. 문화 및 자연유산 관련 전문가 5.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6. 제6조의 건강도시 사업관련 도 정책 담당 국장 7. 그 밖의 건강도시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④ <좌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자연환경연수원 폐지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3월 3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자연환경연수원 폐지 조례안

경상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3월 3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별표 2의 대본초등학교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초등학교		【별표 2】 초등학교	
명칭	위치	명칭	위치
대본초등학교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669-2	삭	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3월 3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이하“공유재산”이라 한다)의 보존 및 관리업무를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2. 교육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인 지역교육청을 말한다.
3. 제1관서 : 본청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과 교원·학생복지후생기

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교육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4. 제2관서 : 교육청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관서의 장 :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해당 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관서의 장에게,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 받은 사무 중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해당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④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총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등 재산관리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 (위임사무) ① 교육감이 제3조제2항에 따라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나. 공유재산심의회가 생략되는 재산의 용도변경·폐지

다. 해당 관서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관리 및 대부

라.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대장가격 5천만원 이하의 건물과 공작물 및 입목죽의 취득·처분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나. 교육청과 제2관서의 행정재산의 용도변경·폐지

다.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일반재산(해당 지역에 소재한 폐교재산 포함)의 매각, 교환, 양여, 대부, 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현물출자

라. 교육청의 행정재산의 관리와 사용·수익허가

마. 교육청과 제2관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② 교육장이 제3조제3항에 따라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2. 해당 관서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관리 및 대부

3. 공유재산심의회가 생략되는 재산의 용도변경·폐지
 4.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대장가격 5천만원 이하의 건물과 공작물 및 입목죽의 취득·처분
- ③ 제1항에 따른 위임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본청과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청에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정보과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담당관 및 기획관리국 각 과 과장으로 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산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 할 수 있다.
1.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
 2. 각종 회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
 3. 그 밖에 단순 경미한 사항
- ⑤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청에 심의회를 둔다.
1. 심의회는 지역실정에 맞게 교육장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9조제10호에 따라 교육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문화 및 복지 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복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허가에 관한 사항
5.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는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 등 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6. 영 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위탁개발에 따라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대장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용도변경·폐지
 4. 다음 각 목의 공유재산에 대한 용도변경·폐지
 - 가.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 (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와 같다)
 - 나. 일반 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 다. 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제7조 (기부채납의 원칙)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조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무상사용 기간 및 부당한 조건배제) ①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라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1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장은 그에 속하는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이 제출한 관리계획이 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그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처분) ①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처분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리계획 작성) 제10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행정재산

제13조 (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사용목적에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때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지 않는다.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5조 (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16조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① 행정재산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인이나 단체에게 일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때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실제 필요한 비용을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국가·지방자치단체·산업체 등에서 연수, 시험 등의 목적으로 시설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 6개월 이상 장기 사용 할 때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장(교육행정기관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 주민, 학부모회 또는 동문회 등이 건전한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4. 그 밖의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하지 않은 일수의 사용료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지된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⑧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받은 자가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는 허가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재산관리관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7조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교육감이 직접 시행한다.

제19조 (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 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대부

제20조 (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1 (대부계약의 해지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2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3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게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4조 (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교육감이 교육행정목적,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되는 경우
 4.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는 재산
 5.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목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학교의 학교급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학교급식법」에 의한 학교 위탁급식의 경우 교실 등 식사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은 대가없이 제공할 수 있다.
 4.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6.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7.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8.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연간 대부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 ⑥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
 2. 폐교일 이전 5년 이상 해당 폐교의 통학구역 또는 중학구안에 거주하여 온 자가 주민 복지시설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
 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문화예술 또는 문화산업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증대시설 용도로 대부(다만, 단체 또는 사인이 대부할 경우 제외)하는 폐교재산

제25조 (토석 채취료 등) ① 제24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가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써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은 토석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제24조에 따라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 할 때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 할 때 건물 및 부지의 대부 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계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 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 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 (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에서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경상북도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에서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 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에서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경상북도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에서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에서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경상북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에서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3조제1호에서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1,000분의 500

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다만, 단체 또는 사인이 대부할 경우 제외) :

1,000분의 300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제28조 (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 공공 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 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재산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② 전세금은 경상북도교육청교육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하였을 경우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대부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할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29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100분의 10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0조 (대부료의 납기) ①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 시작일 전일까지로 하며, 1년 이상의 경우 둘째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시작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 (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 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2조 (대부계약서) 대부계약(무상계약 포함)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2절 매각

제33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교육감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때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 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천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교육감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교육감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교육감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천제곱미터 또는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 내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때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
4. 교육감과 교육감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교육감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3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교육감 이외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35조 (매각대금 및 사용료·대부료의 사용) ①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 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5장 공유임야 관리

제36조 (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립하여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 (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6장 청사관리

제38조 (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기관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피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39조 (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0조 (청사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등

제7장 관사관리

제41조 (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교육감·부교육감 또는 소속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된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2조 (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교육감이 사용하는 관사
2. 2급 관사 : 3급 이상 공무원(3급 상당 이상 장학관 포함)과 교육장·본청 직속기관장이 사용하는 관사
3. 3급 관사 : 1급 및 2급 이외의 관사

제43조 (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 사용 기관장 및 학교장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44조 (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5.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통, 가스렌지 등 직접 사용 관리하는 시설 또는 기구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

제45조 (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46조 (사용허가의 취소)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44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의 관사의 합리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47조 (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 유지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5. 전기요금(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6. 전화요금(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7. 수도요금(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9. 취사용 가스 사용료(단, 1급 관사에 한함.)

제48조 (사용료의 면제) 제42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 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49조 (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47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0조 (인계·인수 등) ① 제46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 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1조 (변상조치) 관사 사용 중에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52조 (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1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제53조 (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의 매각 및 대부의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조치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54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5조 (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6조 (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57조 (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지방교육재정 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 제58조 (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9조 (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원 이상 : 1년 4회 분납
2. 200만원 이상 : 2년 4회 분납
3. 300만원 이상 : 3년 4회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 나. 그 밖의 거짓서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61조 (합필의 신청) 교육감은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2조 (공유토지의 분필)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63조 (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공유재산의 질의회신, 지침 및 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29조 및 제30조 규정의 개정에 따른 일시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감면사항,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적용 및 대부료 등의 납기 등은 이 조례를 시행한 날 이후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나, 기존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계약에 따라 계속 사용 및 대부 중인 자로서 다음연도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별 표]

행정재산 일시 사용료 징수 기준(제16조 관련)

(금액단위 : 원)

시 설 명	사 용 료(원)		비고
	4시간 까지	4시간 초과	
일 반 교 실	5,000원 이상	10,000원 이상	1실당
특 별 교 실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체육관, 강당	30,000원 이상	60,000원 이상	
운 동 장	30,000원 이상	60,000원 이상	잔디 운동장의 경우 추가 징수 가능
테 니 스 장	30,000원 이상	60,000원 이상	
기 타 사 항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 수할 수 있음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처분관리)①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1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처분)①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1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처분)①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6조..... ⑥..... 1. (생략) 2.그 지역 주민들이 건전한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3. 기타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다른 법령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제16조..... ⑥..... 1. (현행과 같음) 2.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 주민, 학부모회 또는 동문회 등이 건전한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의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제16조..... ⑥..... 1. (현행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다른 법령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4. 그 밖의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3월 3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명절(구정, 추석)과 명절 전날 및 다음날
2. 월요일.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그 다음일로 한다.
3. 체험관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제3항 중 “제2항제1호”를 “제2항제2호”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제2항제2호 및 동항제3호”를 “제2항제3호 및 동항제4호”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관람시간) 체험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하절기(3월~10월) : 09:00~18:00
2. 동절기(11월~2월) : 09:00~17:00

제8조제1호를 삭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험관 관람료(제5조 관련)

(단위 : 원)

일 반		청소년 및 군인		어 린 이		비 고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단체는 20인 이상
3,000원	2,000원	2,000원	1,500원	1,500원	1,000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생략) ② (생략) 1. 월요일.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그 다음일로 한다. 2. 체험관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명절(구정, 추석)과 명절 전날 및 다음날 2. 월요일.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 일은 그 다음일로 한다. 3. 체험관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는 휴관일 없이 개관한다.	③제2항제2호----- ----- -----.
④도지사는 제2항제2호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험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체험관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2항제3호 및 동항제4호-- ----- ----- -----.
제4조(관람시간) 체험관의 관람시간은 9 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도지사 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 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관람시간) 체험관의 관람시간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1. 하절기(3월~10월) : 09:00~18:00 2. 동절기(11월~2월) : 09:00~17:00
제8조(입장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금지한다. 1. 정신이상자 및 술에 취한 자 2. ~ 6. (생략)	제8조(입장의 금지) ----- ----- 1. <삭제> 2. ~ 6.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3월 3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3월 3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43조”를 “「도로법」 제41조”로 한다.

제2조 중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을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으로 한다.

제4조의2 중 각호의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당해 시 도는 군”을 “당해 시·군”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 (목적) 이 조는 <u>도로법</u>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u>도로법</u> 」 제41조----- ----- -----.
제2조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u>도로법시행령</u> 제24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2조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 ----- ----- ---「 <u>도로법시행령</u> 」 제28조 제5항--- ----- -----.
제4조의2 (점용료의 감면) 생략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u>건설교통부령</u> 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u>건설교통부령</u>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제4조의2 (점용료의 감면) 현행과 같음 1----- ----- <u>국토해양부령</u> ----- ----- 2----- ----- <u>국토해양부령</u> ----- -----.

현행	개정안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u>건설교통부령</u>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생략 제7조 (징수의 위임) ①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u>당해 시 또는 군</u>에 교부하여야 한다.	3.----- ----- ----- -----<u>국토해양부령</u>----- ----- -----. 4.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당해 시·군</u>----- -----.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3월 3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를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하천법(이하‘법’이라 한다)제38조,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사력 등 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를 “하천법(이하‘법’이라 한다)제37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 변상금, 하천수 사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및 감면”로 한다.

제2조의 조 제목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을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 조 제목 “(점용료등의 감면)”을 “(점용료 등의 감면)”로 하고,
“하천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를 “법 제37조 제5항, 제
50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58조”로 한다.

제5조의 조 제목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를 “(점용료 등의 징수시
기)”로 하고, 제2항 중 “유수사용, 토지의점용, 토석·사력 등 하천
산출물을 채취가 6월이상이고 점용료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 ”를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납부한 점용료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70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
으로 토석·모래·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게 되거나
하천점용 허가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②제3조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
용료 등은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납부한 날(나누어 납부한 경우에는 최종 납부일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 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변상금)①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
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
과하 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③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 의 종류 및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지 제1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경상북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 징수조례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 료 징수 조례	제명 띄어쓰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 의 점용료, 토석·사력 등 하 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하 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 이 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5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 43조, 제44조,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점용료, 토 석, 모래·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 변상금, 하천수 사용 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 이라 한다)의 부 과·징수 및 감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생략 ②하천법 제38조 제4항의 규 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담점용 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 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인 100 분의 120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현행과 같음. ②삭제	변상금 조 항 신설에 따른 삭제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하천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감면 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37조 제5항, 제50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58조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생략 ②유수사용, 토지의 점용, 토석·사력 등 하천 산출물을 채취가 6월이상이고 점용료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 예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현행과 같음. ②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상위법령 개정때론 조항 정비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하천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사력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때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납부한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70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등을 취소한 경우 2.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게 되거나 하천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상위법령 개정때론 조항 정비
②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②제3조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신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납부한 날(나누어 납부한 경우에는 최종 납부일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신설〉	제8조의2(변상금)①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③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및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납부하여야 한다.	상 위 법 령 개정에 따른 조항 신설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가.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나.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 /100 다만,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기령까지 조림수익 분배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하천구역내의 토석, 모래·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하천시설의 점용	제1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4. 하천수 사용료	가. 발전용수 1일 100m³에 대하여 연액 231원 나. 농업용수 1일 1000m³에 대하여 연액 231원 다.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그 밖의 용수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구 분	산 정 기 준												
5. 선박 등의 운항	가.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1) 갑지 : 월액 20,000원 2) 을지 : 월액 10,000원 3) 병지 : 월액 6,000원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시 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												
	나. 5톤 이하 유선												
	<table><tr><th>지역등급</th><th>동력선</th><th>무동력선</th></tr><tr><td>갑 지</td><td>월 100,000원</td><td>월 50,000원</td></tr><tr><td>을 지</td><td>월 60,000원</td><td>월 30,000원</td></tr><tr><td>병 지</td><td>월 20,000원</td><td>월 10,000원</td></tr></table>	지역등급	동력선	무동력선	갑 지	월 100,000원	월 50,000원	을 지	월 60,000원	월 30,000원	병 지	월 20,000원	월 10,000원
	지역등급	동력선	무동력선										
	갑 지	월 100,000원	월 50,000원										
	을 지	월 60,000원	월 30,000원										
	병 지	월 20,000원	월 10,000원										
	※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1/10을 가산												
	다. 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만,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												
	라. 고무보트 외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 선박은 나목에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 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 나목의 무동력선의 반액												
마. 부선(유선시설은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 1) 50톤 미만 월액 40,000원 2) 50톤 이상~100톤 미만 월액 50,000원 3) 100톤 이상~200톤 미만 월액 70,000원 4) 200톤 이상~300톤 미만 월액 90,000원 5) 300톤 이상~400톤 이하 월액 110,000원 6) 400톤 초과 시는 100톤 증가 시 마다 16,000원씩 가산													
바.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 고시한다.													

구 분	산 정 기 준
6.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가. 하천의 경우 도지사가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 모래·자갈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7. 죽목갈대목초 및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6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의 기준의 예에 따라 결정한다.
8. 스케이트장·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유·도선의 모선을 포함하며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 운동장·풀장·대기장·탈의장(매점포함)	토지가격의 5/100
9.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전 각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 비 고

1. 1건의 점용료 등이 2천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3.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끝수는 매1일을 1/365년으로 한다.
4. 점용면적이 1㎡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 면적이 1㎡미만인 경우에는 1㎡로 본다.

[별표 2]

점용료 등 감면기준(제3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100퍼센트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하천법」 제28조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100퍼센트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100퍼센트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100퍼센트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용수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100퍼센트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00퍼센트
7.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100퍼센트
8. 군 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것인 경우	100퍼센트
9.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 수송시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10. 「하천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3호에서 “하천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가.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 등의 전액을 면제한다. 나.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 등을 감면한다. 다.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점용료 등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변 상 금 통 지 서

대상자	① 성 명		②생년월일 (남,여)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⑤ 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			점유 면적 (㎡)	점유기간	변상금(원)	비 고
소 재 지	지 목	지적(㎡)				

「하천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귀하께서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도지사 (시장·군수) (인)

귀하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3월 3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신고) ①경상북도민(주민등록상)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②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주소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접수 및 처리) ①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별지 2호 서식”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위법여부를 현장확인한 후 “별지 3호 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및 처리 이외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 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 ①소방서장은 제3조에 의한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이미 위법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3. 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관련 지도·단속·점검 등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관리업 등 소방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등이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②비상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1회 포상금은 5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 후 같은 장소에서 위반행위의 신고시에도 신규 신고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하나의 위법행위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대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소방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되, 신고한 내용이 포상금 지급대상일 경우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신고사항이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포상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신고포상금 지급을 심사하기 위해 각 소방서별로 “신고포상심사위원회” (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업무담당 과장)을 포함한 지방소방위 이상의 5~7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며 간사 1인(업무담당자)을 둔다.

③ 심사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여부 등을 심사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신고포상 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며 위원은 회의록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인의 보호) ①소방서장은 신고인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이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고사항	신고일	년 월 일 시 분 초		
	신고기관			
	대상건물	업소명		
		주소 또는 위치		
	신고내용		선택 (체크)	<구체적 사실 기술>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위와 같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소방서장 귀하				
※ 붙임자료 ○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및 기타 증빙자료 등				

<별지 제2호 서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	신고일자	신고방법	신고인		신고내용	처리내용			포상금지급액 (지급일자)	비고
			성명	연락처		현지 확인일자	조사결과	민원 회신일자		

주) 신고방법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인터넷), 일반전화, 인터넷, FAX, 우편, 직접방문, 기타 등으로 기재

364mm×257mm[일 반용지 60g/㎡(재 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사항 확인조서

포 상 대상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신 고 내 용	접수일자						
	신고요지						
확 인 및 처 리 사 항	확인일자						
	위반내용						
	위반법규						
	처분내역 (처분일자)						
	위반업소 현 황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소 속			직 급			
				성 명			

※ 붙임자료 : 사진 또는 (동)영상 및 기타 자료

주) 처분내역 란에는 행정처분, 과태료 등 처분사항 모두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 결정서

1. 포상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2. 포상심사내용

포상심사의뢰기관		심사의뢰서 접수일자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신고요지		
	위반내용		
	위반법규		
	처분내역		
포상금 지급기준			

3. 포상결정내용

포상내용	
포상 결정사유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제 ○ 차 신고포상심사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자	
2. 회의장소	
3. 참 석 자	외 명
4. 회의안건	1. 2. 3.
5. 회의결과	
6. 첨부서류	

위원장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3월 3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43조”를 “「도로법」 제41조”로 한다.

제2조 중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을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으로 한다.

제4조의2 중 각호의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당해 시 도는 군”을 “당해 시·군”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u>도로법</u>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u>도로법</u> 」 제41조 ----- ----- -----.
제2조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u>도로법시행령</u> 제24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2조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 ----- ----- ---「 <u>도로법시행령</u> 」 제28조 제5항--- ----- ----- -----.
제4조의2 (점용료의 감면) 생략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u>건설교통부령</u> 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u>건설교통부령</u>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제4조의2 (점용료의 감면) 현행과 같음 1----- ----- <u>국토해양부령</u> ----- ----- ----- 2----- ----- ----- <u>국토해양부령</u> ----- -----.

현행	개정안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u>건설교통부령</u>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생략 제7조 (징수의 위임) ①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u>당해 시 또는 군</u>에 교부하여야 한다.	3.----- ----- ----- -----<u>국토해양부령</u>----- ----- -----. 4.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당해 시·군</u>----- -----.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10년 3월 3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54조의6”을 “「도로법」 제64조”로 한다.

제3조 중 “「도로법」 제15조(이하 ”법“이라 한다)“를 ”「도로법」 제12조(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법 제22조제2항“을 ”법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54조의6제2항”을 “법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 제3호 중 “「건축법」 제9조”를 “「건축법」 제14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5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도로법」 제64조----- ----- ----- ----- ----- -----.
제3조 (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규정에 의한 지방도(법 제22조제2항 규정에 적용되는 지방도를 제외한다. 이하 “도로”라 한다)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등”이라 한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11조 (적용범위)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법 제20조제2항----- ----- ----- ----- ----- -----.
② 생략	②현행과 같음
제4조 (연결허가의 신청 등)①법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를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연결허가의 신청 등)① 법 제64조제2항----- ----- ----- ----- -----.
②~⑤생략	②~⑤현행과 같음

□ 예산안

-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0. 3. 31(수)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보고서



경 상 북 도 의 회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 합 심 사 보 고 서

1. 소관기관 : 경상북도지사

2.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 3. 15, 경상북도지사
- 회부일자 : 2010. 3. 26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 3. 29 : 상정·질의·토론)
 - 제1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 3. 30 : 상정·토론·의결)

3.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김 현 기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4. 예산편성 방향

- 예산조기집행,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재투자
- 지역희망금융사업,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등 서민생활 안정지원
- 투자유치를 통한 안정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농어촌 경쟁력 강화
-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 등 의무적 필수경비 반영

5. 예 산 (안)

가. 총 괄

1) 총 규 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5,457,364	100.0	5,140,500	100.0	316,864	6.2
일 반 회 계	4,651,664	85.2	4,405,120	85.7	246,544	5.6
특 별 회 계	805,700	14.8	735,380	14.3	70,320	9.6
의료급여기금운영	380,831	7.0	380,831	7.4	0	0.0
치 수 사 업	22,991	0.4	22,991	0.4	0	0.0
경북도립대학운영	9,716	0.2	8,314	0.2	1,402	16.9
광 역 교 통 시 설	3,418	0.1	2,424	0.0	994	41.0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46,220	0.8	46,120	0.9	100	0.2
지역개발기금운영	342,524	6.3	274,700	5.3	67,824	24.7

2) 총괄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5,457,364	100.0	5,140,500	100.0	316,864	6.2
자 체 수 입	1,530,978	28.0	1,388,025	27.0	142,953	10.3
지방세 수입	940,000	17.2	930,000	18.1	10,000	1.1
세 외 수 입	590,978	10.8	458,025	8.9	132,953	29.0
경상적수입	55,510	1.0	55,458	1.1	53	0.1
임시적수입	535,467	9.8	402,567	7.8	132,900	33.0
의 존 수 입	3,926,385	71.9	3,752,475	73.0	173,910	4.6
지방교부세	869,994	15.9	818,862	15.9	51,132	6.2
보 조 금	2,901,391	53.2	2,778,613	54.1	122,779	4.4
지 방 채 및 예치금 회수	155,000	2.8	155,000	3.0	0	0.0

3) 총괄 세출예산

가) 기능별(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5,457,364	100.0	5,140,500	100.0	316,864	6.2
일 반 공 공 행 정	926,940	17.0	827,762	16.1	99,178	12.0
공공질서및안전	258,663	4.7	205,240	4.0	53,423	26.0
교 육	8,833	0.2	7,494	0.2	1,338	17.9
문 화 및 관 광	314,470	5.8	279,994	5.5	34,476	12.3
환 경 보 호	436,797	8.0	435,832	8.5	965	0.2
사 회 복 지	1,541,713	28.3	1,498,290	29.2	43,423	2.9
보 건	67,672	1.2	66,270	1.3	1,402	2.1
농림해양수산	844,617	15.5	801,000	15.6	43,616	5.5
산업중소기업	160,786	3.0	145,295	2.8	15,492	10.7
수 송 및 교 통	310,911	5.7	295,326	5.8	15,585	5.3
국토및지역개발	229,680	4.2	213,837	4.2	15,842	7.4
과 학 기 술	23,705	0.4	20,809	0.4	2,896	13.9
예 비 비	33,875	0.6	46,285	0.9	△12,411	△26.8
기 타	298,704	5.5	297,065	5.8	1,638	0.6

나) 조직별(총괄)

(단위 : 백만원, %)

실 국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5,457,364	100.0	5,140,500	100.0	316,864	6.2
의 회 사 무 처	13,012	0.2	12,487	0.2	525	4.2
공 보 관	2,025	0.0	1,829	0.0	196	10.7
새 경 북 기 획 단	76,542	1.4	61,270	1.2	15,272	24.9
도청이전추진단	5,258	0.1	2,342	0.1	2,916	124.5
기 획 조 정 실	609,795	11.2	535,310	10.4	74,485	13.9
경제과학진흥국	178,604	3.3	166,418	3.2	12,185	7.3
공 무 원 교 육 원	5,004	0.1	4,893	0.1	111	2.3
감 사 관 실	387	0.0	389	0.0	△2	△0.6
보건복지여성국	1,546,564	28.3	1,520,288	29.6	26,276	1.7
행 정 지 원 국	427,988	7.8	424,533	8.3	3,455	0.8
환경해양산림국	658,416	12.1	653,355	12.7	5,061	0.8
보건환경연구원	7,931	0.2	7,580	0.2	352	4.6
농 수 산 국	627,964	11.5	588,156	11.4	39,809	6.8
농 업 기 술 원	42,445	0.8	42,011	0.8	434	1.0
투 자 통 상 국	63,265	1.2	48,769	1.0	14,496	29.7
관 광 산 업 국	61,795	1.1	51,956	1.0	9,839	18.9
문 화 체 육 국	216,775	4.0	192,136	3.7	24,639	12.8
건설도시방재국	717,583	13.2	643,501	12.5	74,082	11.5
낙동강살리기사업단	8,054	0.2	7,592	0.2	462	6.1
소 방 본 부	178,239	3.3	167,371	3.3	10,868	6.5
경 북 도 립 대 학	9,716	0.2	8,314	0.2	1,402	16.9

다) 성질별(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5,457,364	100.0	5,140,500	100.0	316,864	6.2
인 건 비	231,560	4.2	229,514	4.5	2,046	0.9
물 건 비	111,168	2.0	107,513	2.1	3,656	3.4
경상이전	2,235,378	41.0	2,157,477	42.0	77,900	3.6
자본지출	2,168,155	39.7	2,001,318	38.9	166,836	8.3
용 자 및 출 자	202,500	3.7	129,500	2.5	73,000	56.4
보전재원	150,615	2.8	150,615	2.9	0	0.0
내부거래	319,103	5.9	315,015	6.1	4,088	1.3
예비비 및 기 타	38,885	0.7	49,547	1.0	△10,662	△21.5

나. 일반회계

1)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4,651,664	100.0	4,405,120	100.0	246,544	5.6
지 방 세 수 입		940,000	20.2	930,000	21.1	10,000	1.1
세 외 수 입		231,734	5.0	169,001	3.8	62,733	37.1
	경상적수입	23,296	0.5	23,250	0.5	47	0.2
	임시적수입	208,438	4.5	145,751	3.3	62,687	43.0
지 방 교 부 세		869,994	18.7	818,862	18.6	51,132	6.2
보 조 금		2,584,935	55.6	2,462,257	55.9	122,679	5.0
지 방 채 및 예치금 회수		25,000	0.5	25,000	0.6	0	0.0

2)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 기능별(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4,651,664	100.0	4,405,120	100.0	246,544	5.6
일 반 공 공 행 정	584,433	12.6	553,079	12.6	31,354	5.7
공공질서및안전	258,663	5.6	205,240	4.7	53,423	26.0
교 육	3,114	0.1	3,085	0.1	29	0.9
문 화 및 관 광	314,470	6.8	279,994	6.4	34,476	12.3
환 경 보 호	436,797	9.4	435,832	9.9	965	0.2
사 회 복 지	1,160,882	25.0	1,117,459	25.4	43,423	3.9
보 건	67,672	1.5	66,270	1.5	1,402	2.1
농 립 해 양 수 산	844,617	18.2	801,000	18.2	43,616	5.5
산업중소기업	114,566	2.5	99,175	2.3	15,392	15.5
수 송 및 교 통	307,494	6.6	292,902	6.7	14,591	5.0
국토및지역개발	206,689	4.4	190,846	4.3	15,842	8.3
과 학 기 술	23,705	0.5	20,809	0.5	2,896	13.9
예 비 비	33,875	0.7	46,285	1.1	△12,411	△26.8
기 타	294,690	6.3	293,144	6.7	1,546	0.5

나) 조직별(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실 국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4,651,664	100.0	4,405,120	100.0	246,544	5.6
의 회 사 무 처	13,012	0.3	12,487	0.3	525	4.2
공 보 관	2,025	0.0	1,829	0.0	196	10.7
새 경 복 기 획 단	76,542	1.7	61,270	1.4	15,272	24.9
도청이전추진단	5,258	0.1	2,342	0.1	2,916	124.5
기 획 조 정 실	267,271	5.8	260,610	5.9	6,661	2.6
경제과학진흥국	132,384	2.9	120,298	2.7	12,085	10.1
공 무 원 교 육 원	5,004	0.1	4,893	0.1	111	2.3
감 사 관 실	387	0.0	389	0.0	△2	△0.6
보건복지여성국	1,165,733	25.1	1,139,457	25.9	26,276	2.3
행 정 지 원 국	427,988	9.2	424,533	9.6	3,455	0.8
환경해양산업국	658,416	14.2	653,355	14.8	5,061	0.8
보건환경연구원	7,931	0.2	7,580	0.2	352	4.6
농 수 산 국	627,964	13.5	588,156	13.4	39,809	6.8
농 업 기 술 원	42,445	0.9	42,011	1.0	434	1.0
투 자 통 상 국	63,265	1.4	48,769	1.1	14,496	29.7
관 광 산 업 국	61,795	1.3	51,956	1.2	9,839	18.9
문 화 체 육 국	216,775	4.7	192,136	4.4	24,639	12.8
건설도시방재국	691,174	14.9	618,086	14.0	73,088	11.8
낙동강살라가사업단	8,054	0.2	7,592	0.2	462	6.1
소 방 본 부	178,239	3.8	167,371	3.8	10,868	6.5

다) 성질별(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4,651,664	100.0	4,405,120	100.0	246,544	5.6
인 건 비	228,481	4.9	226,495	5.1	1,986	0.9
물 건 비	106,740	2.3	103,117	2.3	3,623	3.5
경상이전	1,815,729	39.0	1,738,839	39.5	76,890	4.4
자본지출	2,116,256	45.5	1,949,888	44.3	166,368	8.5
융자및출자	12,000	0.3	6,000	0.1	6,000	100.0
보전재원	19,480	0.4	19,480	0.4	0	0.0
내부거래	319,103	6.9	315,015	7.2	4,088	1.3
예비비 및 기타	33,875	0.7	46,285	1.1	△12,411	△26.8

다. 특별회계

1)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합계	805,700	100.0	735,380	100.0	70,320	9.6
의료급여기금운영	380,831	47.3	380,831	51.8	0	0.0
치수사업	22,991	2.9	22,991	3.1	0	0.0
경북도립대학운영	9,716	1.2	8,314	1.1	1,402	16.9
광역교통시설	3,418	0.4	2,424	0.3	994	41.0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46,220	5.7	46,120	6.3	100	0.2
지역개발기금운영	342,524	42.5	274,700	37.4	67,824	24.7

2) 특별회계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805,700	100.0	735,380	100.0	70,320	9.6
	세외수입	359,244	44.6	289,024	39.3	70,220	24.3
	경상적수입	32,214	4.0	32,208	4.4	6	0.0
	임시적수입	327,030	40.6	256,816	34.9	70,214	27.3
	보 조 금	316,456	39.3	316,356	43.0	100	0.0
	지 방 채 및 예치금회수	130,000	16.1	130,000	17.7	0	0.0

3) 특별회계 세출예산

가) 기능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805,700	100.0	735,380	100.0	70,320	9.6
일반공공행정	342,507	42.5	274,683	37.4	67,824	24.7
교 육	5,719	0.7	4,410	0.6	1,309	29.7
사 회 복 지	380,831	47.3	380,831	51.8	0	0.0
산업중소기업	46,220	5.7	46,120	6.3	100	0.2
수 송 및 교 통	3,418	0.4	2,424	0.3	994	41.0
국토및지역개발	22,991	2.9	22,991	3.1	0	0.0
기 타	4,014	0.5	3,921	0.5	93	2.4

나) 조직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805,700	100.0	735,380	100.0	70,320	9.6
기 획 조 정 실		342,524	42.5	274,700	37.4	67,824	24.7
	예산담당관실	342,524	42.5	274,700	37.4	67,824	24.7
경 제 과 학 진 흥 국		46,220	5.7	46,120	6.3	100	0.2
	에너지정책과	46,220	5.7	46,120	6.3	100	0.2
보 건 복 지 여 성 국		380,831	47.3	380,831	51.8	0	0.0
	사 회 복 지 과	380,831	47.3	380,831	51.8	0	0.0
건 설 도 시 방 재 국		26,409	3.3	25,415	3.5	994	3.9
	균 형 개 발 과	3,418	0.4	2,424	0.3	994	41.0
	치 수 방 재 과	22,991	2.9	22,991	3.1	0	0.0
경 북 도 립 대 학		9,716	1.2	8,314	1.1	1,402	16.9

다) 성질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805,700	100.0	735,380	100.0	70,320	9.6
인 건 비	3,079	0.4	3,019	0.4	60	2.0
물 건 비	4,428	0.6	4,395	0.6	33	0.8
경상이전	419,649	52.1	418,638	56.9	1,011	0.2
자본지출	51,898	6.4	51,430	7.0	468	0.9
융자및출자	190,500	23.6	123,500	16.8	67,000	54.3
보전재원	131,135	16.3	131,135	17.8	0	0.0
예비비 및 기타	5,011	0.6	3,262	0.4	1,749	53.6

라. 채무부담행위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채 무 부 담 행 위 내 용	채무부담 행 위 액		사 유	상환계획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경정	기정		
계				6000	0		
지방도 건 설 확포장	지방도 확 충	지방도 건 설	○ 지방도사업 (도로철도과)	6000	0	지방도사업 조기 마무리	2011년

6. 검토의견

가. 총괄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조 1,405억원보다 3,169억원(6.2%)이
증액된 5조 4,574억원임.
- 회계별로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조 4,051억원보다 2,465억원
(5.6%)이 증액된 4조 6,517억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354억원보다 703억원(9.6%)이
증액된 8,057억원임.

◆ 추경예산안 규모 ◆

(단위 : 억원, %)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계	54,574	100.0	51,405	100.0	3,169	6.2
일반회계	46,517	85.2	44,051	85.7	2,465	5.6
특별회계	8,057	14.8	7,354	14.3	703	9.6

나. 회계별 주요내용

1) 일반회계

가) 총 규모는

- 기정예산 4조 4,051억원보다 2,465억원(5.6%)이 증액된 4조 6,517억원임.

나) 세입예산의 재원별 세부내역은

- 지방세는 보통세에서 10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 세외수입의 순증은 627억원으로
 - 잉여금 400억원, 전입금 209억원, 부담금이 14억원 등임.
- 중앙지원금은 1,738억원으로
 - 지방교부세 511억원, 보조금 1,227억원이며,
 - 주요 내역은
 - 지방교부세 재정 보전분 445억원
 - 부동산 교부세(09년 정산분) 45억원
 - 기초 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 54억원
 -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51억원
 - 시설원예 지열난방 시스템 보급 지원 84억원
 -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105억원
 - 혁신도시~입석교차로간 도로확장사업 45억원
 -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139억원 등임.

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편성 내용으로는

-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부문 848억원
-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부문 354억원
- 사회복지, 보건 부문 448억원
- 농림해양수산 부문 436억원
- 산업·중소기업, 과학기술 부문 183억원
-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 304억원
- 기타 부문에 1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 예비비는 124억원을 감액하였음.

라) 성질별 편성 내용으로는

- 인건비 20억원 증액
-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등 물건비 36억원 증액
- 일반보상금, 출연금, 자치단체 이전 등 경상이전 769억원 증액
-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치단체 자본이전 등 자본지출 1,664억원 증액
- 기금 및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 41억원 증액
- 예비비는 124억원을 감액하였음.

2) 특별회계

가) 총 규모는

- 기정예산 7,354억원보다 703억원(9.6%)이 증액된 8,057억원임.

나) 의료급여기금운영은

- 세입과 세출 총계 부분에서는 증감 변동이 없으며,
- 세출에서 민간위탁사업인 의료급여진료비에서 2억원을 감액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 의료급여 관리 사업과 의료급여 사례 관리자 인부임 등에 2억원을 증액 계상함.

다) 경북도립대학운영은

- 세입에서 전입금 13억원, 국고보조금 1억원 등 총 14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 세출에서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기업지원사업 대응투자비 및 대학시설 개보수 등에 증액 계상함.

라) 광역교통시설은

- 세입에서 잉여금 8억원, 부담금 2억원 등 총 10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 세출에서 광역도로사업 추진으로 10억원을 증액 계상함.

마)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는

- 세입에서 부담금으로 1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 세출에서 지역개발사업(시설비) 22억원을 감액하여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양성자 가속기 지원 등)에 10억원, 그린 아일랜드 조성사업에 4억원, 시군에너지 시책 대상에 5억원, 청사 고효율 조명 기구(LED) 및 태양열 시범설치 등에 2억원을 계상함.

바) 지역개발 기금운영은

- 세입에서 이월금으로 678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 세출에서 기금 융자금에 670억원, 예비비에 8억원을 증액 계상함.

다. 채무부담행위

- 채무부담행위는 지방도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하여 신규로 6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 상환계획은 2011년에 상환할 예정임.

라. 종합 검토의견

1)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수입 부문에서 10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올해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으로 이양한 지방소비세¹⁾가 실물경기 회복세 조짐이 나타나면서 소비심리 증가로 인해 당초 예상한 징수액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재정 운용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 우리 道의 지방세의 주 수입원인 취·등록세가 당초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제 동향 및 징수 현황 등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세수 확보를 위해 철저한 세원 관리,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위한 대책 수립 등 道 차원의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 세외수입 중 순세계 잉여금은

2010년도 당초예산에 800억원을 반영하였고 금번 추경에 400억원을 편성하여 총 1,200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음.

1) 현재 국세인 부가세 일부를 지방세로 돌려 활용하자는 것.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도입

- 이러한 순세계 잉여금을 이번 추경예산에 많이 편성한 것은 의도적인 추경 재원 차원으로 판단되나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전입금 209억원은

지역상생 발전기금으로 이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자치단체가 낙후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지방소비 세입 중 35%를 지역상생 발전기금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수평적 재원 조정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지역상생 발전기금이 지방재정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할 때 넉넉한 지원 규모는 아니지만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알뜰하게 집행해서 지역 불균형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의존수입은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지원 사업의 추가 확보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 지방교부세 511억 원은

지방이양사업의 재원인 분권교부세 변동분과 지방교부세 재정 보전분 445억원, 부동산 교부세 '09년도 정산분 45억원임.

○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같이 중요한 중앙의존 재원으로 세입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55.6%)²⁾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발전, 사회간접 인프라 구축, 도민의 일자리 마련 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바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연말 정리 추경 시 매년 반복적으로 사업비가 중앙에 반납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2) 국고보조금 세입(일반회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비 고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국고보조금	2,584,935	55.6%	2,462,257	55.9%	122,679	4.98%	

나) 세출예산

○ 금번 추경 예산안은

예산의 조기집행,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재투자, 서민생활 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여건 개선 및 미래 성장 동력 확충, 농어촌 경쟁력 강화 등에 재원을 집중 배분한 것으로 나타남.

◆ 추경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 ◆

(단위:억원)

구 분	주 요 사 업	예산액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재투자 사업	○ 지역공동체 일자리 100 ○ 희망근로 프로젝트 27 ○ 공공근로사업 27 ○ 기타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등 54	208
저소득층 및 서민생활 안정 지원	○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66 ○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 54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4 ○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등 기타 118	262
투자기반 조성 및 성장 동력 확충	○ 투자지역 토지 매입비 76 ○ 모바일 융합기술센터 구축 지원 29 ○ 지역특화사업 융합로봇 개발 등 기타 161	266
관광 활성화 및 문화체육 기반 조성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지원 120 ○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38 ○ 보문호 멀티미디어쇼 기반시설 조성 35 ○ 테마관광 자원개발 등 기타 151	344
FTA대응 농어촌 경쟁력 강화	○ 시설원예 지원 161 ○ 농어민 주택융자금 지원 60 ○ 농촌마을 생활환경 정비 및 종합개발 37 ○ 마필산업 육성 등 기타 143	401
환경시설 개선 및 산림 자원 확충	○ 수해 상습지 개선 205 ○ 생태하천 및 소하천 정비 160 ○ 하도준설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 46 ○ 쓰레기 위생 매립시설 설치 등 기타 42	453

○ 세출예산의 기능별³⁾ 특이사항은

-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이 534억원(기정대비 26.0% 增)이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친환경적 하천정비 사업의 일환인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도준설사업, 생태하천조성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등의 국비 지원 확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 예비비 부문은 124억원(기정대비 26.8% 減)이나 감액하였는데 이는 일자리 창출 재투자,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빠듯한 살림살이 속에서도 당초예산 편성 시 이미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한 직원 연가보상비, 경상경비 등을 대폭(12.6%) 절감 하였지만 조기 추경에 따른 근본 재원 부족으로 예비비에서 충당한 것으로 사료됨.

○ 세출예산의 조직별⁴⁾ 특이사항은

- 도청이전추진단의 경우 29억원(기정대비 124.5% 增)으로 추경예산 평균 증감률(5.6%)보다 월등하게 높은 증가를 보이는데 이는 도청 이전에 따른 도본청 및 도의회 청사건립 감리비로 국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른 것이며,

3) 검토보고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표 참조

4) 검토보고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직별 분류표 참조

- 투자통상국의 경우 145억원(기정대비 29.7% 増)으로 특히, 투자유치과의 경우 61.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투자기반 조성 및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에 필요한 토지매입비를 증액 계상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관광산업국의 경우 98억원(기정대비 18.9% 増)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경상보조금 비중이 다소 높으며, 추경예산은 가급적 보수적인 예산 편성에 접근하여 사업 예산 위주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기정예산 대비 30%이상 증감 편성⁵⁾ 사업은

- 201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 중 계획변경 등으로 금번 추경에서 30% 이상 증액(사업비 3억원 이상)이 있는 주요사업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66개 사업이며, 30% 이상 감액(기정예산 1억원 이상)이 있는 주요사업은 『대구 경북 어린이 병원 건립 지원』 등 4개 사업임.
- 이 중 도본청 및 도의회 청사 건립 감리비, 지역 전략 산업 진흥사업(섬유분야)지원 등에서는 200% 이상 증액이 있는 반면, 지역실업자 직업 훈련, 대구 경북 어린이 병원 건립 지원 등에서는 50%이상 감액 되었음.

5) 『기정예산 대비 30%이상 증감 편성 사업 현황』은 붙임 참고자료<자료1>에 게재함.

◆ 주요 증감 편성 사업 현황 ◆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증감액	비율	
도청이전추진단	도본청및도의회청사건립감리비	4,000	1,000	3,000	300.0	
미래전략산업과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섬유분야)지원	1,050	300	750	250.0	
기업노사지원과	공공근로사업(이양)	3,184	484	2,700	557.0	
종합건설사업소	교통사고찾은곳개선시설비	692	198	494	250.0	
"	교량정밀안전진단시설비	405	105	300	285.7	
경주소방서	산내전담의용소방대청사신축	406	114	292	255.0	
보건정책과	대구경북어린이병원건립지원	500	1,000	△500	△50.0	
기업노사지원과	지역실업자직업훈련	145	630	△485	△76.9	

- 금번 추경예산은 빠듯한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 중견간부 양성과정 취미 소양 위탁 교육비, 세계 윈드서핑 대회 개최 지원 등 전액 감액 시킨 사업⁶⁾과 50%이상 감액하는 사업의 경우 사실상 사업의 중단 또는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초 예산 수립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됨.

6) 『기정예산 대비 전액감 편성 사업 현황』은 붙임 참고자료<자료2>에 게재함.

○ 신규로 편성한 사업⁷⁾은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한 사업은 총 81건에 1,266억원으로 일반회계 추경재원 2,465억원의 절반(51.4%)을 넘는 수준이며, 경상적 경비도 상당부분 계상되어 있음.
- 주요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100억원), 지역 상생 발전 기금 시군분(63억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54억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66억원), 시설 원예 지열 난방 시스템 보급 지원(92억원) 등이 있는데,

◆ 주요 신규 사업 현황 ◆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비 고
새경북기획단	지역공동체일자리	10,002	
예산담당관	지역상생발전기금(시군분)	6,270	
사회복지과	기초수급자정부양곡할인	5,426	
노인복지과	경로당동절기난방비지원	6,584	
친환경농업과	시설원예지열난방시스템보급지원	9,187	
축산경영과	축사시설현대화사업	4,375	
관광개발과	보문호멀티미디어쇼기반조성	3,450	
체육진흥과	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	3,850	
균형개발과	혁신도시~입석교차로간도로확장사업	4,483	

7) 『주요 신규 사업 현황』은 붙임 참고자료<자료3>에 게재함.

- 이러한 신규사업은 당초예산 위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본 재원부족으로 경상경비 절감과 예비비 감액 등을 통해 조성한 추경 가용 재원의 50%이상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추경 편성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 또한, 신규사업이 행정절차 이행여부 및 타당성 검토 등도 이루어 졌는지, 당초예산 심사 시 반려된 사업이 다시 추경 예산에 계상된 부문이 없는지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과목경정 사업⁸⁾에 대해서

- 과목경정이란 세출예산을 편성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번 추경예산에는 과목경정으로 편성한 사업이 총 30건에 1,978억원을 감액하여 기존(유사)사업 또는 신설사업으로 재편성하는 등 평년 추경 예산 편성 때 보다 상당히 늘어난 규모임.

8) 『과목경정 사업 현황』은 붙임 참고자료<자료4>에 게재함.

- 이러한 과목경정으로 편성하는 사업이 많은 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에 대한 편제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 향후 당초예산은 물론 추경예산을 편성 할 때에는 사업의 규모, 현황, 과목해소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하게 예산을 편제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 중요시책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사전 타당성 조사 등 사업 구체화를 위한 사전용역 등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번 추경에 계상한 연구용역비는 대부분 국비 확보와 연계된 사업 발굴에 초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 국비 확보와 관련한 연구용역비 외 道 자체적으로 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편성한 용역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추경 예산에 계상하는 것 보다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주요 연구용역비 편성 현황 ◆

(단위: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증감액	비율	
정책기획관	도정주요현안사업등용역(공통)	1,700	1,000	700	70.0	
"	성과관리컨설팅용역(09특별교부세)	20	0	20	100	
"	도정만족도설문조사(09특별교부세)	70	50	20	40.0	
미래전략산업과	출연기관(경제과학분야)운영효율화를 위한 발전방안연구용역	50	0	50	100	
"	경북바이오실크산업클러스터육성 계획연구용역	50	0	50	100	
정보통신산업과	경상북도주력IT분야역량조사	40	0	40	100	
노인복지과	건강장수벨트개발기본및실시계획수립	50	0	50	100	
여성청소년가족과	여성정책개발원경영평가용역	10	0	10	100	
인재양성과	지역중심학교육성지원방안에관한 연구용역	30	0	30	100	
새마을봉사과	직원전화친절도모니터링	15	0	15	100	
환경정책과	경북북부지역친환경생태산업클러스터 기본구상용역	50	0	50	100	
"	경상북도환경보전계획수립용역	50	0	50	100	
산림녹지과	산채식품클러스터조성연구용역	50	0	50	100	
축산경영과	승용말육성센터설치사업연구용역	50	0	50	100	
"	재활승마센터설치사업연구용역	50	0	50	100	
"	말산업광역클러스터조성연구용역	50	0	50	100	
문화관광정책사업장	시험장이전기본조사용역	20	0	20	100	
관광산업과	경북관광종합센서스용역	50	0	50	100	
관광개발과	경주태권도성지관광자원화기본구상 및사전예비타당성조사	50	0	50	100	
관광마케팅사업단	중국관광객유치방안연구용역	70	0	70	100	

※ 연구용역비 중 증액 또는 신규로 편성한 사업비만 작성함.

2) 특별회계

- 道에서 운용 중인 특별회계는 총 6종으로 금회 추경예산에는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5종 특별회계를 계상하였는데 대부분 전입금 또는 잉여금의 세입 증가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이 적정하게 계상한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 ▣ 기정예산 대비 30%이상 증감 편성 사업 현황
- ▣ 기정예산 대비 전액감 편성 사업 현황
- ▣ 주요 신규 사업 현황
- ▣ 과목경정 사업 현황

< 자료 1 >

◆ 기정예산 대비 30%이상 증감 편성 사업 현황 ◆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증감액	비율	
도청이전추진단	도본청및도의회청사건립감리비	4,000	1,000	3,000	300.0	
정책기획관	도정주요현안사업등용역(공통)	1,700	1,000	700	70.0	
경제교통정책과	교통연수원운영비지원	755	442	313	70.8	
과학기술과	모바일융합기술센터구축지원	4,300	3,000	1,300	43.3	
"	광역경제권선도산업인재양성사업	300	100	200	200.0	
미래전략산업과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섬유분야)지원	1,050	300	750	250.0	
에너지정책과	청사고효율조명기구(LED)및태양열 시범설치	505	300	205	68.3	
사회복지과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사업	450	225	225	100.0	
"	도시각장애인복지관운영	560	400	160	40.0	
"	영천시보훈회관건립	300	200	100	50.0	
"	청도군보훈회관건립	300	150	150	100.0	
노인복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비	472	251	221	88.0	
"	화장시설설치사업	5,814	4,129	1,685	40.8	
여성청소년과	저소득보육아동간식비지원	1,940	1,293	647	50.0	
"	농어촌소규모보육서비스	411	205	205	100.0	
"	아동복지시설확충	906	569	338	59.3	

(단위:백 만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증감액	비율	
여성청소년과	도청소년수련센터운영지원	1,097	778	319	41.0	
"	도청소년수련센터플라이죠편설치	500	300	200	66.6	
보건정책과	대구경북어린이병원건립지원	500	1,000	△500	△50.0	
"	노인의치보철사업	2,942	2,170	772	35.5	
환경정책과	쓰레기위생매립시설설치사업	6,507	3,507	3,000	85.5	
"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운영	2,230	1,330	900	67.6	
해양정책과	바다낚시공원조성	710	390	320	82.0	
친환경농업과	경관보전직접지불제	709	497	212	42.6	
"	다목적농가형저온저장고설치	500	300	200	66.7	
"	원예작물브랜드육성지원	4,681	3,536	1,145	32.4	
식품유통과	신선농산물수출촉진자금(물류비)	2,263	800	1,463	182.9	
"	농산물해외시장개척및수출상담회	400	200	200	100.0	
농촌개발과	지표수보강개발	3,235	5,235	△2,000	△38.2	
축산경영과	우량송아지생산비용시설지원	520	260	260	100.0	
"	우량송아지생산수급기지조성	1,000	500	500	100.0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6,560	4,766	1,794	37.6	
수산진흥과	어촌종합개발(도시활력)	1,653	3,199	△1,546	△48.3	

(단위:백 만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증감액	비율	
어업기술센터	배합사료지원	765	546	219	40.0	
투자유치과	구미부품소재전용공단조성토지매입비	1,245	500	745	149.0	
"	포항부품소재전용공단조성토지매입비	2,053	1,500	553	36.8	
기업노사지원과	제조업창업기업투자보조금지원	1,326	826	500	60.5	
"	소상공인지원센터운영	831	526	305	57.9	
"	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업체이차보전금	850	350	500	142.8	
"	공공근로사업(이양)	3,184	484	2,700	557.0	
"	중소기업인턴사원제	620	320	300	93.7	
"	재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	350	150	200	133.3	
"	지역실업자직업훈련	145	630	△485	△76.9	
국제통상과	중국북경해외사무소운영	354	200	154	77.0	
관광산업과	언론기획홍보	400	300	100	33.3	
"	국내외특집기획방송홍보	300	200	100	50.0	
"	다중집합장소관광홍보	400	300	100	33.3	
"	한류특별이벤트	450	250	200	80.0	
관광개발과	문화체험관광지원개발	850	350	500	142.9	
관광마케팅 사업단	국제관광교역전및박람회참가	370	150	220	146.6	

(단위:백 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증감액	비율	
관광마케팅사업단	문화관광축제지원	2,350	1,214	1,136	93.5	
문화예술과	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	600	400	200	50.0	
〃	전통사찰간급보수	400	200	200	100.0	
체육진흥과	제49회울진도민체전시설개보수	2,000	1,500	500	33.3	
〃	안동수상스포츠경기장조성	500	250	250	100.0	
〃	전국규모각종체육대회개최지원	400	300	100	33.3	
균형개발과	신활력지역지원사업	16,299	12,490	3,809	30.4	
〃	울진비행교육훈련원설립지원	3,000	1,500	1,500	100.0	
도로철도과	지방도체불용자매입비	660	500	160	32.0	
건축지적과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융자금	12,000	6,000	6,000	100.0	
치수방재과	수해상습지개선사업	38,288	24,153	14,135	58.5	
〃	하도준설사업	7,494	5,210	2,284	43.8	
〃	생태하천조성사업	28,620	20,000	8,620	43.1	
〃	재난관리가금운용	5,571	2,786	2,786	100.0	
종합건설사업소	교통사고잦은곳개선시설비	692	198	494	250.0	
〃	교량보수사업시설비	1,190	890	300	33.7	
〃	교량정밀안전진단시설비	405	105	300	285.7	

(단위:백 만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증감액	비율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	도로구조물보수시설비	968	468	500	106.8	
"	긴급도로보수시설비	884	584	300	51.4	
경주소방서	산내전담의용소방대청사신축	406	114	292	255.7	

※ 증액사업은 예산액 3억원 이상, 감액사업은 기정액 1억원 이상만 작성함.

< 자료 2 >

◆ 기정예산 대비 전액감 편성 사업 현황 ◆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증감액	비율	
공무원교육원	중견간부양성과정취미소양위탁교육비	0	21	△21	△100.0	
산림생태과학원	조류및포유류재활장설치공사	0	30	△30	△100.0	
체육진흥과	세계윈드서핑대회개최지원	0	150	△150	△100.0	
문화재과	안동향교리모델링	0	35	△35	△100.0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119시민수상구조대운영	0	39	△39	△100.0	

※ 기정액 기준 1천만원 이상만 작성함.

< 자료 3 >

◆ 주요 신규 사업 현황 ◆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의회사무처	본관엘리베이터설치	300	
새경북기획단	사회적기업육성사업	800	
"	지역공동체일자리	10,002	
"	주민공동체사업	960	
"	지역일자리종합센터지원등	700	
예산담당관	지역상생발전기금(시군분)	6,270	
"	공공자금관리기금이차보전	2,216	
경제교통정책과	저소득·저신용계층지원지역희망금융사업	1,120	
"	구미-칠곡광역버스정보시스템구축사업	1,336	
"	간선도로교통관리시스템구축	400	
과학기술과	나노융합상용화플랫폼구축사업	670	
에너지정책과	지역에너지절약사업	1,559	
정보통신산업과	농어촌지역광대역가입자망구축	514	
"	줌인(Zoom-in)경북구축	300	
에너지정책과	그린아일랜드조성사업	410	
"	시군에너지시책대상	500	
사회복지과	기초수급자정부양곡할인	5,426	
노인복지과	경로당동절기난방비지원	6,584	
여성청소년가족과	광역새일지원본부지정운영	343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여성청소년가족과	청소년한부모가족검정고시학습비지원	306	
"	안동청소년문화센터건립	500	
보건정책과	자동제세동기설치지원	335	
새마을봉사과	여권발급	359	
세정과	지방행정연구원운영지원	425	
회계계약심사과	청사진환경에너지효율화사업('09특별교부세)	500	
"	도청구내주차시설확충('09특별교부세 640,000천원)	1,000	
"	제2강당개보수공사	300	
경북도립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대응투자비(교육과학기술부)	900	
환경정책과	국가생태탐방로조성사업	715	
독도수호대책팀	독도홍보영상물제작	1,000	
친환경농업과	밭작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520	
"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	2,979	
"	시설원예목재펠릿난방기보급지원	1,002	
"	시설원예지열난방시스템보급지원	9,187	
식품유통과	고품질쌀브랜드육성(시설현대화)	1,380	
농촌개발과	농촌생활환경정비(도시활력)	2,350	
"	지표수보강개발(도시활력)	2,000	
"	소규모옹수개발(도시활력)	759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농촌개발과	기계화경작로확포장(도시활력)	902	
축산경영과	SRM제거시설지원	380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4,375	
"	마필산업육성	2,204	
수산진흥과	어업지도선대체어선건조	380	
"	어업인복지문화센터건립(국가직접지원)	500	
"	어촌종합개발(일반농산어촌개발)	1,546	
민물고기연구센터	토속어류산업화센터건립부지매입	1,500	
투자유치과	경주외국인투자지역조성토지매입비 (서한엔티엔베어링)	2,300	
"	경주외국인투자지역조성토지매입비(징콕스)	2,800	
"	대규모투자기업산업인프라시설지원	1,000	
국제통상과	문화통상교류센터(PGCT)확장	850	
"	경북우수상품전시수출상담회개최	300	
관광개발과	전통한옥개보수및편의시설설치	575	
"	보문호공연관광프로그램개발	300	
"	보문호멀티미디어쇼기반조성	3,450	
"	국민여가캠핑장조성사업	1,300	
문화예술과	구미여헌기념관건립	300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문화예술과	문화를통한전통시장활성화시범사업(문전성시)	390	
"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건립	1,500	
체육진흥과	개방형다목적학교체육관건립	1,425	
"	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	3,850	
"	스포츠클럽시범사업지원	371	
"	2011 경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시설보수	450	
문화재과	문화재상시관리	600	
도시계획과	경주G20행사장진입도로정비	1,200	
균형개발과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	1,800	
"	울진비행교육훈련원소방시설장비구입지원	530	
"	혁신도시-입석교차로간도로확장사업	4,483	
도로철도과	울릉일주도로국지도건설	1,980	
"	봉소교개체공사(09특별교부세)	1,000	
"	미석잠수교개체공사(09특별교부세)	1,000	
"	경부고속철도김천구미역사건립비부담금	1,302	
"	송원~원정간도로확포장공사	1,000	
건축지적과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활력증진)	3,900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건축지적과	취약계층주택개보수사업(국가직접지원)	496	
〃	도로및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	800	
치수방재과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2,323	
〃	낙화암천정비사업(09특별교부세)	1,000	
〃	남천(불로지구)정비사업(09특별교부세)	1,000	
낙동강사업지원팀	낙동강친수생태공간조성국제포럼및전시	400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방차량보강	1,000	
포항남부소방서	해도119안전센터신축	1,874	

※ 총사업비 3억원 이상만 작성함.

< 자료 4 >

◆ 과목경정 사업 현황 ◆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증감액	비율	
노인복지과	독거노인생활관리사대회	0	20	△20	△100.0	
여성청소년가족과	원스톱지원센터운영	0	153	△153	△100.0	
"	지역여성폭력피해지구제활동지원	20	32	△12	△37.5	
"	민간보육시설교재교구비	0	703	△703	△100.0	
"	보육시설차량운영비	0	677	△677	△100.0	
"	만0~4세아차등보육료지원	0	80,369	△80,369	△100.0	
"	만5세아보육료	0	9,164	△9,164	△100.0	
"	장애아무상보육료	0	4,566	△4,566	△100.0	
"	두자녀이상보육료	0	6,546	△6,546	△100.0	
"	기본보육료지원	0	31,492	△31,492	△100.0	
"	맞벌이가구보육료	0	845	△845	△100.0	
보건정책과	방문보건사업운영	0	22	△22	△100.0	
"	재난응급의료무선통신망구축	0	15	△15	△100.0	
환경정책과	그린리더양성및실천활동지원	0	72	△72	△100.0	
수질보전과	하수처리장설치	71,405	99,350	△27,945	△28.1	
"	하수관거정비사업	70,080	73,512	△3,432	△4.7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증감액	비율	
수질보전과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14,842	15,646	△804	△5.1	
독도수호대책팀	독도주변정비사업	10	100	△90	△90.0	
친환경농업과	FTA사업계획수립및관리비지원	0	150	△150	△100.0	
식품유통과	거점APC사업계획수립및관리비지원	0	45	△45	△100.0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	신기술홍보물이미지교체	0	10	△10	△100.0	
붕화고냉지 약초시험장	약초시험포장시설현대화	0	100	△100	△100.0	
"	농기계보관창고설치	0	40	△40	△100.0	
문화재과	국가지정문화재전기시설정비	0	137	△137	△100.0	
"	중요목조문화재방충방염사업	0	62	△62	△100.0	
"	전통가옥초가이영잇기	0	41	△41	△100.0	
"	천연기념물(식물)치료보수사업	0	269	△269	△100.0	
"	등록문화재안내판정비	0	20	△20	△100.0	
도시계획과	헌신~사벌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0	20,000	△20,000	△100.0	
"	무양~남장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0	10,000	△10,000	△100.0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특이사항 없음)

8.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특이사항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23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0. 3. 31(수)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보고서



경 상 북 도 의 회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합 심 사 보 고 서

I. 소관부서 : 경상북도교육감

I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3. 15, 경상북도교육감
2. 회부일자 : 2010. 3. 26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 3. 30 : 상정·질의, 토론·의결)

III.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이동출
2. 제 안 이 유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득하고자 함

IV.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1. 총규모

-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4%에 해당하는 2,783억원이 증액된 2조 9,520억 6천만원으로 편성됨.

◆ 예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A - B	증감율(%)
세입·세출	2,952,055	2,673,757	278,298	10.4

2. 세입예산

-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783억원이 증액된 2조 9,520억 6천만원으로

○ 이전수입은

- 기정예산 2조 5,571억 7천만원보다 2,031억 9천만원(7.9%)이 증액된 2조 7,748억 7천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94.0%를 차지하고 있으며

-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 중앙정부이전수입에서 보통교부금 1,733억원, 특별교부금 15억 7천만원, 국고보조금 80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에서 법정이전수입인 지방교육세전입금 120억원, 시도세전입금 51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비법정이전수입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은 30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 기타 이전수입에서 매전초 재난복구비 등 4천만원이 증액되었음.

○ 자체수입은

- 총 417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4%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408억 6천만원보다 8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 자산임대 및 자산매각대인 자산수입 2억 7천만원, 잡수입 5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음.

○ 차입은

- 총 144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0.5%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127억 3천만원보다 16억 7천만원 증액되었음.

○ 기타수입은

- 총 1,210억 9천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4.1%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484억 8천만원보다 726억원이 증액되었음.

◆ 세입예산 재원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

장 관 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합 계		2,952,055	100.0	2,673,757	100.0	278,298	10.4
이 전 수 입	소 계	2,774,869	94.0	2,571,679	96.2	203,189	7.9
	중앙정부입	2,545,970	86.2	2,362,931	88.4	182,939	7.7
	지방자치단체입	227,847	7.7	207,640	7.8	20,207	9.7
	기타이전수입	1,151	0.0	1,108	0.0	43	3.9
자 체 수 입	소 계	41,701	1.4	40,862	1.5	839	2.1
	교수-학습입	29,528	1.0	29,528	1.1	0	0.0
	행정활동수입	529	0.0	526	0.0	3	0.5
	자산수입	1,034	0.0	766	0.0	268	35.0
	이자수입	10,038	0.3	10,038	0.4	0	0.0
	잡수입	573	0.0	4	0.0	568	11846.1
차 입	소 계	14,399	0.5	12,731	0.5	1,668	13.1
	지방교육채	14,399	0.5	12,731	0.5	1,668	13.1
기 타	소 계	121,086	4.1	48,484	1.8	72,602	149.7
	전년도이월금	121,086	4.1	48,484	1.8	72,602	149.7

3. 세출예산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783억원(10.4%)이 증액된
2조 6,737억 6천만원으로

○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는

기정 예산액 2조 5,604억 2천만원보다 2,462억 4천만원
(9.6%)이 증액된 2조 8,066억 5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5.1%를 차지하며

- 인적자원운용 572억 9천만원
- 교수-학습활동지원 455억 8천만원
- 교육격차해소 3억 1천만원
- 보건/급식/체육활동 50억 4천만원
- 학교재정지원관리 358억 4천만원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021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 평생·직업교육비는

기정 예산액 86억 5천만원보다 19억 6천만원(22.7%)이 증액된 106억 1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4%를 차지하며

- 평생교육 18억 6천만원
- 직업교육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 교육일반비는

기정 예산액 1,047억원보다 301억원(28.8%)이 증액된 1,348억원으로 전체예산의 4.6%를 차지하며

- 교육행정일반 31억 9천만원
- 기관운영관리 270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고
-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1억 7천만원이 감액되었음.

◆ 세출예산 정책사업별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952,055	100.0	2,673,757	100.0	278,298	10.4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소 계	2,806,652	95.1	2,560,416	95.8	246,235	9.6
	인적자원운용	1,556,612	52.7	1,499,319	56.1	57,293	3.8
	교수 - 학 습원 활동지	249,106	8.4	203,530	7.6	45,576	22.4
	교육격차해소	93,203	3.2	92,893	3.5	310	0.3
	보건 / 급 식 / 체육 활동	33,817	1.1	28,772	1.1	5,045	17.5
	학교 재 정 관리	634,912	21.5	599,074	22.4	35,838	6.0
	학교 교육 여 건 개선	239,002	8.1	136,829	5.1	102,173	74.7
평생 직업 교육	소 계	10,607	0.4	8,648	0.3	1,959	22.7
	평 생 교 육	6,631	0.2	4,769	0.2	1,863	39.1
	직 업 교 육	3,976	0.1	3,879	0.1	96	2.5
교육 일반	소 계	134,796	4.6	104,693	3.9	30,104	28.8
	교육 행정 일반	46,176	1.6	42,986	1.6	3,190	7.4
	기관 운영 관리	46,381	1.6	19,298	0.7	27,083	140.3
	지방 채 상 환 및 리 스	30,889	1.0	31,059	1.2	△170	△0.5
	예 비 비 및 기 타	11,350	0.4	11,350	0.4	0	0.0

□ 세출예산의 성질별 규모는

○ 인건비는

- 기정예산보다 11억 4천만원(0.1%)증액된 1조 2,679억 9천만원

○ 물건비는

- 기정예산보다 99억 5천만원(9.8%) 증액된 1,120억원

○ 이전지출비는

- 기정예산보다 468억 4천만원(24.7%) 증액된 2,365억원

○ 자산취득비는

- 기정예산보다 1,434억원(85.7%) 증액된 3,106억 5천만원

○ 전출금은

- 기정예산보다 769억 8천만원(8.5%) 증액된 9,865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금 액	%	금액	%		
합 계	2,952,055	100.0	2,673,757	100.0	278,298	10.4
인 건 비	1,267,990	43.0	1,266,848	47.4	1,143	0.1
물 건 비	111,996	3.8	102,046	3.8	9,950	9.8
이전지출	236,499	8.0	189,664	7.1	46,835	24.7
자산취득	310,652	10.5	167,255	6.3	143,397	85.7
상환지출	27,000	0.9	27,000	1.0	-	-
전 출 금	986,567	33.4	909,590	34.0	76,977	8.5
예비비및기타	11,350	0.4	11,354	0.4	△4	0.0

□ 세출예산의 기관별 편성내역은

- 교육위원회는 기정예산보다 7천만원 증가한 6억 2천만원 이고
- 본청 예산은 기정예산 2조 892억 3천만원보다 9.8% 증가한 2조 2,943억 8천만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77.7%를 차지하며
- 경상북도교육연구원을 비롯한 직속기관 예산은 기정예산 249억 7천만원보다 14.8%증가한 286억 5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 포항교육청을 비롯한 23개 지역교육청은 기정예산 5,590억원 보다 12.4%증가한 6,284억원으로 전체예산대비 21.3%를 차지하고 있음.

◆ 세출예산 기관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금액	%	금액	%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952,055	100.0	2,673,757	100.0	278,298	10.4
교육위원회	624	0.0	552	0.0	72	13.0
본 청	2,294,383	77.7	2,089,230	78.1	205,153	9.8
직속기관	28,651	1.0	24,967	0.9	3,684	14.8
지역교육청	628,397	21.3	559,008	20.9	69,389	12.4
포항교육청	110,574	3.7	105,788	4.0	4,786	4.5
경주교육청	58,335	2.0	48,095	1.8	10,240	21.3
김천교육청	53,494	1.8	33,880	1.3	19,614	57.9
안동교육청	39,621	1.3	37,724	1.4	1,897	5.0
구미교육청	65,692	2.2	60,430	2.3	5,262	8.7
영주교육청	26,935	0.9	24,672	0.9	2,263	9.2
영천교육청	24,687	0.8	21,537	0.8	3,150	14.6
상주교육청	26,364	0.9	25,147	0.9	1,217	4.8
문경교육청	16,719	0.6	14,713	0.6	2,006	13.6
경산교육청	54,353	1.8	51,109	1.9	3,244	6.3
군위교육청	7,261	0.2	6,627	0.2	634	9.6
의성교육청	16,677	0.6	14,012	0.5	2,665	19.0
청송교육청	10,942	0.4	10,593	0.4	349	3.3
영양교육청	6,985	0.2	6,514	0.2	471	7.2
영덕교육청	9,729	0.3	8,953	0.3	776	8.7
청도교육청	12,450	0.4	11,678	0.4	772	6.6
고령교육청	11,771	0.4	9,910	0.4	1,861	18.8
성주교육청	12,082	0.4	11,329	0.4	753	6.6
칠곡교육청	22,268	0.8	20,966	0.8	1,302	6.2
예천교육청	10,869	0.4	10,384	0.4	485	4.7
봉화교육청	11,137	0.4	9,316	0.3	1,821	19.5
울진교육청	13,331	0.5	11,518	0.4	1,813	15.7
울릉교육청	6,121	0.2	4,113	0.2	2,008	48.8

V. 검토의견

□ 세입부문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 재원은 기정예산액보다 2,783억원이 증액된 2조 9,520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이전수입 2,031억 9천만원, 자체수입 8억 4천만원, 차입 16억 7천만원, 전년도 이월금 726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금회 추경의 세입재원 중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당초예산에서 484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추경에 726억원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한 것은 추경예산 편성재원 활용을 위해 당초예산 편성시 추계치를 축소 편성한 것으로 향후 본예산 편성시에는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 개선대책이 요구됨.
- 그리고 차입금인 지방교육채 발행 16억 7천만원은 학교신설에 따른 부지매입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교육채 및 이자상환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상환될 예정임.

□ 세출부문

○ 학교폭력 방지와 관련하여

- 학교내 폭력 및 성폭력 방지와 관련한 예산은 학교폭력예방지원 9억 6천만원,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교육자료개발 3천만원, 학교 성폭력예방 CCTV설치 12억 5천만원,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4억 5천만원, 배움터 지킴이 배치운영 4억 1천만원 등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 교내 폭력 및 성폭력 문제가 연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사업들이 폭력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200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CCTV 설치 사업은 금년에 사업이 완료가 되더라도 모든 학교 수의 50% 정도⁹⁾만이 설치가 되므로 전체 학교에 조속히 설치를 완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9) 2010년도 CCTV 설치계획

(단위 :교)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전체학교수	497	278	193	7	975
설치학교수	250	140	97	4	491
비율	50.3%	50.3%	50.2%	57.1%	50.3%

- 또한, 폭력예방교육, 성교육 등을 통하여 학생들 스스로도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여 당해 사업이 실질적 효과를 거양할 수 있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임.

○ 학교시설 내진 보강사업 확대추진

-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기존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 실시로 학생들의 안전보장 및 지역사회 방재거점 역할 추진을 위하여 학교시설 내진보강 공사비 23억 9천만원, 그린스쿨 사업 선정학교 내진보강 공사비 14억 5천만원 등 38억 4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음.
- 최근 중국, 아이티, 칠레 등 전세계에서 강진이 발생하여 많은 인명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규모는 크지 않으나 지난해에 지진이 총 60회¹⁰⁾나 발생하는 등 안전지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을 하여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또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지역내 방재거점이 될 수 있도록 공사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이며,

10) 2009년 지진 발생 현황 (출처:기상청<http://www.kma.go.kr>)

(M : 진도)

연도	M≥5	5>M≥4	4>M≥3	3>M	총횟수
2009		1회	7회	52회	60회

- 2014년까지인 이 사업을 완료하더라도 우리 道内の 내진화 시설을 갖추게 되는 학교는 10.9%밖에 되지 않으므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학교에도 보강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학습보조 인턴교사 사업¹¹⁾과 관련하여

- 학습보조 인턴교사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대응투자하는 방식으로 7개 분야에 총 564명의 인원이 특별교부금 14억 5천만원, 국고보조금 14억 5천만원, 교육비특별회계 33억 7천만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임.
- 2009년 하반기에 이어 금년에도 실시되는 당해 사업은 공교육의 경쟁력제고 및 청년실업해소가 목적이므로 인턴교사들에게 분야별로 목적에 맞는 업무를 배정하고 직무에 관한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여 사업 취지에 맞는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1) 2010년 학습보조 인턴교사 지원 현황

번호	구분	인원수	비고
1	학력중점학교학습보조 인턴교사	159명	
2	특수교육지원센터 인턴교사	44명	
3	사교육없는학교 학습보조 인턴교사	37명	
4	수준별 이동수업보조 인턴교사	35명	
5	위기자녀전문상담 인턴교사	75명	
6	과학실습보조 인턴교사	126명	
7	전문계고산학협력 인턴교사	88명	
계		564명	

○ 사(私)교육비 경감 대책

- 초등돌봄 교실운영 103억 2천만원,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10억 7천만원, 저소득층 자유수강권지원 18억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지원 3억 7천만원 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 사교육 경감 대책 사업으로 방과후 수업, 사교육 없는 학교 등의 활성화로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적은 비용으로 교육의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철저

- 경상북도 학생해양수련원 신축 218억 1천만원, 다목적 강당 증축(공·사립) 87억 5천만원, 생활관 증축·보수 324억 9천만원 등이 대규모 투자사업에 편성되어 있음.
- 최근 타시도의 학교시설 공사시 부실 시공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다목적 강당, 생활관 증축 등 대규모

모 시설 투자시 철저한 시공 관리로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감독에 유의하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니 만큼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세밀한 배려하에 시설을 건립하여야 할 것임.

- 또한 도내 전체적인 인구수 감소 현상과 출산율의 저하에 따라 생활관 등 수용시설을 이용하는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적정규모의 시설이 지원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소규모학교 통폐합

- 우리도내 학교 중 학생수가 지나치게 적어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운 소규모학교 15개¹²⁾가 통폐합되면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지원으로 187억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12) 2010년도 통폐합 학교 내역

구분	학교명	통합학교명	구분	학교명	통합학교명
포항시	구룡포동부초	구룡포초 구동분교	경산시	남산초 삼성분교	남산초
경주시	오릉초등	월성초	문경시	동성초 마성분교	동성초
	경주초등 화천분교	경주초	의성군	상천초	금성초
	양북초 송전분교	양북초	고령군	고령중	고령여중
	의곡초 우라분교	의곡초		고령여자중고	고령고(고령실교)
김천시	금오산초	운곡초	봉화군	봉화중 봉성분교	봉화중
구미시	산동초 송백분교	산동초	울릉군	울릉중태하분교	울릉서중
영주시	부석초 남대분교	부석초			

- 소규모학교 통폐합 지원사업은 결국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환경 마련해 주는 차원이므로 통폐합된 15개 학교의 학생들의 학습권이 제약받지 않도록 교육환경 개선 및 통학버스 운행 등 제반여건을 조속히 완료하여야 할 것임.
- 또한 학교 통폐합으로 인하여 농어촌 황폐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작은학교가꾸기’ 사업 등을 통하여 소규모 학교 특성화로 지역정주 인구를 늘림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 도교육청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783억원(10.4%)이 증가한 2조 9,520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어 대부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기타 지원금 등 목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 내역을 살펴보면 국가시책사업과 「경북교육 2010」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투자가 이루어져 있는 바,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예산의 조기 집행으로 지역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VI. 질의 및 답변요지 : 특이사항 없음

VII.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VIII. 심사결과 : 원안가결

IX. 소수의견의 요지 : 특이사항 없음

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동 의 안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의결안
- 경상북도개발공사 자보금(현물)출자 계획안
- 2010년도 공유재산 수시 관리계획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

의 안 번 호	409
------------	-----

제출연월일 2010. 3. 12

제 출 자 경상북도지사

1. 제안 이유

-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지역발전위원회, 2009. 9. 16)에 의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운용하기로 결정함.
-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개정(2010. 1. 1 공포·시행)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도록 함.
- 발전기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고,
-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도록 함.
-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서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을 설립할 경우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16개 시·도가 합의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합을 설립함으로써 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합 구성에 관한 사항

- 조합의 명칭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함 (안 제2조).
- 조합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조합원”이라 한다)를 구성원으로 함 (안 제3조).
- 조합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두도록 함 (안 제4조).
- 조합은 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 지방채 및 공사채의 인수,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발전기금의 운용성과분석, 지방재정 제도 연구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 (안 제5조).

나. 조합회의에 관한 사항

- 조합에는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합회의를 두며, 위원은 조합원(시·도)의 기획업무 담당실장(기획관리실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담당국장,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지방재정전문가 2명으로 구성함 (안 제6조).
- 조합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조합회의 위원중에서 각 1명씩 선출, 임기는 1년으로 함 (안 제7조).
- 조합회의는 조합의 규정 제·개정 및 폐지, 조합의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중요재산 취득·처분, 발전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

의결 및 결산의 승인, 그 밖에 조합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 (안 제8조).

다. 집행기관에 관한 사항

- 조합에는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 사무를 총괄하는 임기 3년(연임 가능)의 조합장을 두며, 조합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과 조합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함 (안 제13조).
- 조합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두며 사무직원은 관계기관에서 파견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함 (안 제14조).

라.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과 융자관리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융자관리계정은 「지방세법」 제159조의5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100분의 5를 적용하여 지방소비세 세액을 계산하는 한, 운용하지 아니함* (안 제16조, 부칙 제2조).

* 이는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것임

- 조합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조합회의의 의결을 얻어 확정하며, 발전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집행, 재무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함 (안 제17조).
- 조합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조합회의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을 얻도록 함 (안 제18조).

- 재정지원계정은 법 제17조의2제3호에 따른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등의 용도로 운용 함 (안 제19조).
- 융자관리계정은 법 제17조의2제1호에 따른 예치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법 제18조제1호에 따른 지방채의 인수 등의 용도로 운용 함 (안 제21조).

마. 기타

- 조합장은 법 14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사업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을 얻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5조).
- 조합은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6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발체) : 「지방자치법」 제15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부터 제2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2조2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을 위한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의 명칭) 조합의 명칭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구성) 조합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조합원”이라 한다)를 구성원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 조합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

제5조(조합의 사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
2. 지방채 및 공사채의 인수
3.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4. 발전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5. 조합채의 발행
6. 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위탁사무
7. 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 및 지방자치단체 제공
8. 조합원이 합의하여 조합에 위임한 사무

- 9. 지방재정 제도 연구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 10. 기타 조합회의에서 결정한 사무

제2장 조합회의

제6조(조합회의의 구성) ① 조합에는 조합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조합회의를 둔다.

② 조합회의는 1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1. 조합원의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 2.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을 담당하는 국장
- 3.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지방재정전문가 2인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장 및 부의장) ① 조합회의는 위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의장은 조합회의를 대표하며, 조합회의를 관장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장 또는 부의장이 제1항의 임기중에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의장 및 부의장직을 승계한다.

제8조(조합회의의 의결사항) ① 조합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조합규약의 개정안
2. 조합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조합의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조합의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발전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의결 및 결산의 승인
6. 조합채 발행에 관한 사항
7. 일시차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조합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② 조합회의는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조합회의의 운영) ① 조합회의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장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④ 조합회의는 안건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의장은 회의 개최후 개최결과를 7일 이내에 조합원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합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행정사무감사) ① 조합회의는 매년 하반기 정기회의시 조합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5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조합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조합회의는 조합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실무협의회) ① 조합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의 예산담당 과장 또는 재정담당 과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담당 과장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조합회의 상정안전에 대한 사전 검토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회의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집행기관

제13조(조합장) ① 조합에는 조합장을 두며, 지방재정분야의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과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의 장을 조합장으로 추천하여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임할 수 있다.

② 조합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을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경우에 그 조합장의 임기는 수탁기관의 장으로서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발전기금의 관리·운용 등 조합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14조(사무기구) ① 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사무기구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용하는 직원과 관계기관에서 파견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발전기금의 관리·운용

제15조(발전기금의 회계년도) 발전기금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16조 (발전기금의 계정 구분) 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과 용자관리계정으로 구분한다.

제17조(발전기금운용계획 및 집행) ① 조합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조합원의 의견을 듣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조합회의의 의결을 얻어 확정하여야 한다.

③ 조합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조합원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발전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집행, 재무회계,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결산) ① 조합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조합회의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의결을 얻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조합원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은 3인 이내로 하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재정지원계정 운용

제19조(재정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2제3호에 따른 출연금
2. 재정지원계정의 운용수익
3. 융자관리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② 재정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2. 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
3. 융자관리계정으로의 전출
4. 그 밖에 재정지원계정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비

제20조(지원기준 및 사용용도) ① 제19조제2항제1호에 의한 재정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포괄보조금 형태로 배분한다.

② 제19조제2항제2호에 의한 지원대상 보조사업은 조합회의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재정지원의 기준 및 배분방법 등과 제2항에 의한 보조사업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용자관리계정 운용

제21조(용자관리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용자관리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2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재원
2. 용자관리계정의 운용수익
3. 재정지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② 용자관리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법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용도
2. 법 제20조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3. 재정지원계정으로의 전출
4. 그 밖에 용자관리계정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비

제22조(지방채 등 인수 대상) 법 제18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및 공사채(이하 “지방채 등”이라 한다)의 인수대상은 다음 각호 사업으로 한다.

1. 문화·관광개발 사업
2. 농림·수산 개발사업
3. 산업·중소기업 육성 사업
4. 수송 및 교통 개발 사업
5. 기타 조합회의에서 인정하는 사업

제23조(지방채 등 인수 기준 등) ① 매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 등 인수 규모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② 지방채 등 인수 이자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표하는 「공공자금관리 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인수 이자율을 감안하여 조합회의에서 정한다.
- ③ 지방채 인수 기준, 이자율, 인수절차, 상환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발전기금에의 예치금) ① 조합원은 자신의 소관 기금 및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사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발전기금에 예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및 특별회계의 여유자금도 예치받아 관리·운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치금에 대한 이자율, 예치기간, 상환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25조(성과분석) ① 조합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 발전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 중 사업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을 얻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③ 성과분석 및 인센티브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사무위탁) 조합은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발전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무를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조합의 해산) ① 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② 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조합원의 협의에 의한다.

제28조(기타)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기금계정 운용에 관한 특례) 제16조 규정에 의한 발전기금계정 중 용자관리계정은 「지방세법」 제159조의5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100분의 5를 적용하여 지방소비세 세액을 계산하는 한, 운용하지 아니한다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10.1.1개정)

-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 운용)
 - 지자체간 상생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
 - 시·도는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가능
-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 통합관리기금·지역개발기금의 예치금, 지방채발행 수입, 일시차입금, 서울·인천·경기도의 출연금, 기타 지자체 출연금 등
-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 지방채·공사채의 인수, 예치금의 원리금 상환, 지자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지원 등
- 제20조(발전기금조성을 위한 지방채발행 등)
 -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하여 지방채발행과 일시차입 가능
- 부 칙
 - 서울·인천·경기도의 발전기금 출연기한은 2019. 12. 31 까지로 함
 - 과세표준에 $\frac{5}{100}$ 를 적용하여 지방소비세 세액을 계산하는 한, 발전기금은 지자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용도만 활용, 재정지원은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10.2.8개정)

- 제12조(전문기관)
 - 전문기관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며, 위탁할 경우 조합회의의 의결로
- 제12조2(출연금)

· 서울·인천·경기도의 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분기말까지 납입

경상북도개발공사 자본금(현물)출자 계획안

의 번	안 호	411
--------	--------	-----

제출일자 : 2010. 3. 12.

제 출 자 : 경 상 북 도 지 사

1. 제안이유

-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자본금 639억원으로 우리 도의 현안사업 및 주민복리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여 왔으며,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사업,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 등 道 대형시책 사업추진에 대비하고 개발공사의 지속적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1,700억원 상당 규모의 현물을 출자하여 도 시책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상북도개발공사에 자본금을 추가로 현물출자 하고자 함.

- 출자액 : 169,540,325천원(감정가액)
 - 토 지 : 164,027,306천원(145필지, 669,243m²)
 - 건 물 : 5,513,019천원(22동, 15,339m²)

※ 출자총액 : 233,438,410천원(기출자 63,898,085천원)

- 출자조건

- 출자재산 중 사업소 부지는 이전시까지 무상임대 사용
- 이전이 결정될 시 이전지역에 경상북도개발공사가 무상으로 청사와 부지제공(출자토지 면적 상당)
- 기타, 일반재산은 향후 도에서 부지 필요시 출자범위내에서 토지를 현물로 배당

3. 출자재산 목록 : 별첨 1

4. 관계법령 발취 : 별첨 2

별첨 1

출 자 재 산 목 록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산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공시지가(원)	감정가액(천원)
총계						169,540,326.6
계	토 지			669,243		164,027,306.7
	건 물			15,339		5,513,019.9
1	대구시 서구 비산동	1185-6	대지	1619.0	559,000	1,056,900.0
2			건물	1,042.3		164,029.1
3	대구시 서구 비산동	1202-9	전	7.0	251,000	1185-6에 가격포함
4	대구시 서구 중리동	1073	공장	3,886.0	695,000	3,842,475.0
5			건물	574.2		70,631.5
6	대구시 서구 이현동	44-80	공장	55.0	695,000	1073에가격포함
7	대구시 남구 대명동	15-126	대지	3,914.0	435,000	2,700,660.0
8			건물	1,451.9		115,430.1
9	대구시 남구 대명동	516-15	대지	379.8	550,000	319,032.0
10	대구시 북구 산격동	산124-15	임야	198.0	631,000	142,560.0
11	대구시 북구 학정동	942-9	대지	369.1	1,000,000	692,062.5
12	대구시 북구 학정동	943	대지	1,520.0	1,000,000	2,926,000.0
13	대구시 북구 학정동	944	대지	5,253.0	524,000	4,333,725.0
14	대구시 북구 학정동	946-1	대지	319.2	1,000,000	566,225.0
15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산104	임야	23,802.0	4,750	147,572.4
16	포항시 북구 항구동	17-11	대지	2,433.0	585,000	1,727,430.0
17	포항시 북구 항구동	17-12	대지	2,656.0	850,000	2,709,120.0
18	포항시 북구 항구동	17-253	대지	1,107.0	1,220,000	1,693,710.0
19	포항시 북구 항구동	17-254	대지	742.0	1,440,000	1,331,890.0

일련 번호	재산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원)	감정가액(천원)
20	포항시 남구 해도동	16-13	대지	899.2	407,000	458,592.0
21			건물1	141.3		12,530.9
22			건물2	330.6		36,363.8
23			건물3	78.0		10,272.0
24	포항시 남구 괴동동	1146	대지	48,436.2	107,000	7,507,611.0
25			건물1	3,821.0		2,235,285.0
26			건물2	825.8		495,498.0
27			건물3	2,036.5		1,069,173.0
28	영덕군 강구면 소월리	135-1	대지	3,851.0	14,700	317,782.5
29			건물	719.3		101,205.6
30	영덕군 강구면 소월리	158	대지	1,990.0	14,700	135-1에가격포함
31			건물	192.2		21,535.6
32	대구시 북구 동호동	산48	임야	19,835	2,140	79,340.0
33	대구시 북구 동호동	산50	임야	94,711	2,160	393,050.7
34	대구시 북구 동호동	산57-1	임야	2,479	2,140	9,916.0
35	대구시 북구 동호동	산57-2	임야	331	2,400	2,532.2
36	대구시 북구 동호동	138	목장용지	5,787	136,000	176,503.5
37	대구시 북구 동호동	138-3	목장용지	255	206,000	38,250.0
38	대구시 북구 동호동	138-4	목장용지	503	206,000	75,450.0
39	대구시 북구 동호동	146	목장용지	10,608	63,600	988,512.0
40	대구시 북구 동호동	151	목장용지	4,939	136,000	768,510.0
41	대구시 북구 동호동	151-3	목장용지	6	141,000	1,461.0
42	대구시 북구 동호동	161-3	목장용지	118	161,000	33,158.0
43	대구시 북구 동호동	172-2	목장용지	342	161,000	96,102.0
44	대구시 북구 동호동	181-1	목장용지	311	177,000	65,310.0
45	대구시 북구 동호동	181-2	답	2,407	168,000	878,555.0

일련 번호	재산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원)	감정가액(천원)
46	대구시 북구 동호동	181-7	목장용지	217	141,000	52,839.5
47	대구시 북구 동호동	181-8	목장용지	36	161,000	10,116.0
48	대구시 북구 동호동	187-2	목장용지	188	141,000	45,778.0
49	대구시 북구 동호동	187-4	목장용지	206	161,000	57,886.0
50	대구시 북구 동호동	194-2	답	1,802	190,000	552,313.0
51	대구시 북구 동호동	203-2	구거	485	111,000	49,227.5
52	대구시 북구 동호동	203-3	답	1,385	247,000	424,502.5
53	대구시 북구 동호동	204-1	답	56	202,000	5,684.0
54	대구시 북구 동호동	204-6	답	278	297,000	59,631.0
55	대구시 북구 동호동	204-14	답	366	297,000	102,519.0
56	대구시 북구 동호동	205-4	답	188	198,000	57,622.0
57	대구시 북구 동호동	209-3	목장용지	1	137,000	243.5
58	대구시 북구 동호동	214-4	목장용지	86	141,000	20,941.0
59	대구시 북구 동호동	416-12	임야	314	175,000	63,114.0
60	대구시 북구 동호동	475	답	581	203,000	78,151.5
61	대구시 북구 동호동	477-1	답	6,747	178,000	1,865,928.0
62	대구시 북구 동호동	477-2	도로	88	125,000	8,932.0
63	대구시 북구 동호동	477-3	도로	7	125,000	710.5
64	대구시 북구 동호동	477-5	답	3,711	178,000	935,476.0
65	대구시 북구 동호동	485-2	답	23	183,000	6,463.0
66	대구시 북구 동호동	486-4	답	122	183,000	34,282.0
67	대구시 북구 동호동	492-2	답	3,479	80,000	679,645.5
68	대구시 북구 동호동	492-6	답	2,821	183,000	796,564.0
69	대구시 북구 동호동	504-2	답	1,563	213,000	376,559.5
70	대구시 북구 동호동	524-4	목장용지	691	242,000	193,888.0
71	대구시 북구 동호동	525	목장용지	2,750	216,000	831,550.0

일련 번호	재산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원)	감정가액(천원)
72	대구시 북구 동호동	526	답	1,795	269,000	625,310.0
73	대구시 북구 학정동	산8-8	임야	595	66,100	24,395.0
74	대구시 북구 학정동	산8-9	임야	6,607	2,620	34,356.4
75	대구시 북구 학정동	272	답	103	140,000	27,192.0
76	대구시 북구 학정동	533-1	답	5,426	181,000	1,947,867.5
77	대구시 북구 학정동	533-2	답	2,118	182,000	760,387.5
78	대구시 북구 학정동	534	답	15,187	183,000	4,267,547.0
79	대구시 북구 학정동	535	답	6,198	183,000	1,741,638.0
80	대구시 북구 학정동	542	답	15,986	187,000	4,492,066.0
81	대구시 북구 학정동	545-1	답	5,482	187,000	1,540,442.0
82	대구시 북구 학정동	545-2	답	2,138	187,000	600,778.0
83	대구시 북구 학정동	549	답	22,090	187,000	6,207,290.0
84	대구시 북구 학정동	550	답	10,812	187,000	3,038,172.0
85	대구시 북구 학정동	652	답	22,226	187,000	6,245,506.0
86	대구시 북구 학정동	660	답	22,301	187,000	6,266,581.0
87	대구시 북구 학정동	684-8	답	10	173,000	2,520.0
88	대구시 북구 학정동	685-2	답	202	183,000	56,762.0
89	대구시 북구 학정동	686-3	답	231	183,000	64,911.0
90	대구시 북구 학정동	689	답	15,930	187,000	4,476,330.0
91	대구시 북구 학정동	694	답	255	183,000	71,655.0
92	대구시 북구 학정동	700	답	16,143	187,000	4,536,183.0
93	대구시 북구 학정동	705	답	440	187,000	123,640.0
94	대구시 북구 학정동	706	답	1,866	187,000	524,346.0
95	대구시 북구 학정동	706-2	답	9,798	187,000	2,753,238.0
96	대구시 북구 학정동	711-5	답	142	267,000	37,772.0
97	대구시 북구 학정동	715-3	답	159	263,000	42,294.0

일련 번호	재산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원)	감정가액(천원)
98	대구시 북구 학정동	716-6	답	883	255,000	237,527.0
99	대구시 북구 학정동	716-9	답	1,011	245,000	266,079.0
100	대구시 북구 학정동	716-11	답	543	247,000	137,373.0
101	대구시 북구 학정동	716-14	답	817	245,000	199,157.0
102	대구시 북구 학정동	716-16	답	24	247,000	5,631.0
103	대구시 북구 학정동	717-3	답	620	256,000	163,955.0
104	대구시 북구 학정동	717-5	답	83	267,000	23,987.0
105	대구시 북구 학정동	717-6	답	128	247,000	36,992.0
106	대구시 북구 학정동	717-7	답	349	259,000	92,576.5
107	대구시 북구 학정동	717-10	답	321	259,000	77,526.0
108	대구시 북구 학정동	717-12	답	51	247,000	4,743.0
109	대구시 북구 학정동	726	답	6,558	187,000	1,842,798.0
110	대구시 북구 학정동	752	답	1,721	196,000	497,369.0
111	대구시 북구 학정동	752-2	창고용지	1,200	205,000	363,600.0
112	대구시 북구 학정동	752-4	답	4,491	196,000	1,261,971.0
113	대구시 북구 학정동	764	답	499	194,000	140,219.0
114	대구시 북구 학정동	773-1	답	532	194,000	153,748.0
115	대구시 북구 학정동	774-2	답	879	188,000	254,031.0
116	대구시 북구 학정동	775-4	답	99	184,000	28,611.0
117	대구시 북구 학정동	776-4	답	66	194,000	19,074.0
118	대구시 북구 학정동	777-1	답	295	205,000	85,255.0
119	대구시 북구 학정동	777-2	답	128	188,000	36,992.0
120	대구시 북구 학정동	778-1	답	426	194,000	123,114.0
121	대구시 북구 학정동	824-2	전	2,780	192,000	803,420.0
122	대구시 북구 학정동	830	전	2,188	160,000	632,332.0
123	대구시 북구 학정동	835-2	전	185	198,000	53,465.0

일련 번호	재산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원)	감정가액(천원)
124	대구시 북구 학정동	836-1	답	600	153,000	149,475.0
125	대구시 북구 학정동	839	전	714	155,000	189,381.0
126	대구시 북구 학정동	829	전	5,917	180,000	1,662,677.0
127	대구시 북구 학정동	841-1	전	3,272	180,000	919,432.0
128	대구시 북구 학정동	842-1	전	567	152,000	126,018.0
129	대구시 북구 학정동	847	답	6,122	180,000	1,689,439.5
130	대구시 북구 학정동	848	답	1,311	152,000	328,419.0
131	대구시 북구 학정동	848-2	답	6	152,000	1,179.0
132	대구시 북구 학정동	854	답	5,570	187,000	1,721,130.0
133	대구시 북구 학정동	867-2	답	1,355	194,000	391,595.0
134	대구시 북구 동호동	191-1	전	3,253	297,000	413,131.0
135	대구시 북구 동호동	191-2	전	656	297,000	252,560.0
136	대구시 북구 학정동	산8-3	도로	1,413	353,000	628,785.0
137	대구시 북구 학정동	산9-6	도로	466	341,000	207,370.0
138	대구시 북구 학정동	474-1	전	4,188	190,000	1,725,456.0
139	대구시 북구 학정동	485	잡종지	9,453	295,000	6,501,005.0
140	대구시 북구 학정동	485-1	잡종지	4,945	295,000	
141	대구시 북구 학정동	485-2	전	26	11,600	
142	대구시 북구 학정동	485-6	전	185	63,000	
143	대구시 북구 학정동	485-10	전	67	28,400	5,259.5
144	대구시 북구 학정동	487-1	대	9	295,000	4,005.0
145	대구시 북구 학정동	490-1	전	3,068	84,100	389,636.0
146	대구시 북구 학정동	490-2	전	2,744	280,000	777,924.0
147	대구시 북구 학정동	474-1	건물	300.00		62,400.0
148	대구시 북구 학정동	485	건물	1119.00		486,953.6

일련 번호	재산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원)	감정가액(천원)
149	대구시 북구 학정동	485 485-1 485-2 485-6	건물	256.17		63,672.0
150			건물	257.58		64,314.0
151			건물	560.64		152,494.0
152			건물	189.48		19,327.0
153			건물	313.73		32,000.5
154			건물	16.80		3,796.8
155	대구시 북구 학정동	579	답	26,148	321,000	9,622,464.0
156	대구시 북구 학정동	601	답	22,185	311,000	9,013,950.0
157	대구시 북구 학정동	629	답	24,062	321,000	8,854,816.0
158	대구시 북구 학정동	644	답	18,093	187,000	5,084,133.0
159	대구시 북구 학정동	669	답	28,903	187,000	8,075,543.0
160	대구시 북구 학정동	776-1	전	304	179,000	85,424.0
161	대구시 북구 학정동	859-9	답	79	335,000	29,072.0
162	대구시 북구 학정동	864-5	답	3,871	180,000	1,087,751.0
163	대구시 북구 학정동	866-5	답	1,749	315,000	622,637.0
164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240-4	대지	2,565	420,000	2,026,350.0
165			건물1	587.52		178,312.3
166			건물2	330.07		78,795.1
167			건물3	195.00		39,000.0

※ 출자단위 : 1주 5,000원(5,000원 미만 절사), 근거 : 경상북도개발공사설치조례 제5조4항

별첨2

관 계 법 령 발 취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외의 단체에 대하여는 출자를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 ① 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관리 및 처분)

- ① 일반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 ② 일반재산의 사권설정, 현물출자 및 대물변제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4조(현물출자 및 증권의 평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해당 출자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국유재산법」 제62조에 따른 출자가액 결정방법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국유재산법 제62조(출자가액 산정)

제60조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일반재산의 출자가액은 제44조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지분증권의 산정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의 액면가에 따른다.

○ 국유재산법 제44조(처분재산의 가격결정)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2조 (처분재산의 예정가격)

①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2. 대장가격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2010년도 공유재산 수시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414
----------	-----

제출일자 : 2010. 3. 12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국가와 함께 부지를 매입하여 신성장 녹색산업인 풍력발전기의 부품·소재 생산업체(일본NTN사 등)와 제철회사의 분진을 재생하여 아연 등을 추출하는 업체(영국ZincOx사)에 제공함으로써, 신기술 이전을 통한 연관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 의성『토속어류 산업화센터』건립으로

토속어류의 대량양식 기술개발과 보급체계를 구축하여 내수면산업 활성화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토지취득 3건, 109,868㎡, 5,611백만원)

○ 서한엔티엔베어링(주) 예정부지 매입

- 풍력발전기용 베어링 제조업체, 일본NTN사 등 3개사 공동지분 -

- 위 치 : 경주시 건천2 일반산업단지 내
- 면 적 : 86,873㎡ 중 10,859㎡

- 사업비 : 2,313백만원(총 18,504백만원)

※ 사업비 및 취득지분 : 국75%, 도12.5%, 경주시12.5%

○ 징곡스코리아(주) 예정부지 매입

- 전기 아크로 분진 재생업체, 영국 ZincOx사 100%지분 -

- 위 치 : 경주시 천북일반산업단지 내
- 면 적 : 92,600m² 중 11,575m²
- 사업비: 2,800백만원(총 22,400백만원)

※ 사업비 및 취득지분 : 국75%, 도12.5%, 경주시12.5%

○ 의성 『토속어류 산업화센터』 건립부지 매입

- 위 치 :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483번지 외 91필지
- 면 적 : 87,434m²
- 사업비 : 498백만원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1. 《생략》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6천제곱미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5천제곱미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①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

①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에 대하여 지원하는 재정자금의 지원항목 및 지원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국가가 매입하는 토지의 비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지역의 경우는 100분의 40, 기타지역의 경우는 100분의 75

붙임 : 2010년도 공유재산 수시 관리계획서

2010년도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

(일반회계)

□ 총괄표

구분			상반기			하반기			합계			비고
			건수	수량 (㎡)	금액 (천원)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	금액 (천원)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3	109,868	5,610,530				3	109,868	5,610,530	
	1.매입	토지 건물 기타	3	109,868	5,610,530				3	109,868	5,610,530	
	2.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이하여백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계 토지		3건	109,868m ²	5,610,530			
		3건	109,868m ²	5,610,530			
1	공장 용지	경주시 건천2일 반 산업단지 6-2B, 8B	86,873m ² 중 10,859m ²	2,312,994 (지분해당액)	'10.4	외국인투자 기업유치	부지 매입
2	공장 용지	경주시 천북 일 반 산업단지 31B	92,600m ² 중 11,575m ²	2,800,000 (지분해당액)	'10.4	외국인투자 기업유치	부지 매입
3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483번지 외 91필지 (세부내역 : 별지)	87,434m ²	497,536	'10년	토속어류 산업화센터 건립	부지 매입

□ 의성 『토속어류 산업화센터』 건립부지 목록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공시지가)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	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483	1,435	8,869	2010년도	토 속 어 류 산업화센터 건 립	부 지 매 입
2	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484	2,913	17,304			
3	묘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489	1,058	6,486			
4	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490	3,319	20,346			
5	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493	2,595	13,702			
6	묘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494	298	1,574			
7	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495	1,831	9,668			
8	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497	116	645			
9	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499	3,861	20,386			
10	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500	2,618	15,290			
11	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505	3,107	17,275			
12	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506	4,734	26,321			
13	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507	1,484	7,866			
14	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508	2,519	13,351			
15	답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533	5,557	27,452			
16	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1059	1,555	9,082			
17	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1073	110	653			
18	구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1072-2	169	1,003			
19	구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1072-3	63	374			
20	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1073-1	169	1,003			
21	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484-1	66	392			
22	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488-3	60	326			
23	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491-1	1,445	7,876			
24	답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492-1	1,997	10,684			
25	답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492-2	727	3,890			
26	답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496-13	1,253	8,020			
27	답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496-14	1,021	6,535			
28	답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496-15	2,360	15,104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공시지가)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29	답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496-16	2,377	15,213	2010년도	토 속 어 류 산업화센터 건 립	부 지 매 입
30	답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496-17	1,660	10,624			
31	답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496-18	3,531	22,599			
32	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496-4	255	1,632			
33	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498-1	3,269	17,522			
34	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498-2	99	634			
35	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498-3	1,293	7,552			
36	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530-1	7	41			
37	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531-1	7	45			
38	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531-2	3	20			
39	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532-1	33	212			
40	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532-2	10	64			
41	유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532-3	3,441	21,713			
42	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536-2	9	8			
43	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536-3	47	41			
44	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537-1	6	33			
45	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537-2	26	144			
46	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537-4	309	1,703			
47	유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538-2	273	1,619			
48	답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538-3	248	1,471			
49	유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538-4	419	2,485			
50	답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538-5	605	3,588			
51	답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550-6	1,114	5,504			
52	구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552-3	51	252			
53	과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552-4	533	2,788			
54	답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552-5	666	3,290			
55	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554-1	57	289			
56	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558-1	157	886			
57	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559-3	29	24			
58	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537-3	248	1,471			
59	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542-25	158	937			
60	답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539	925	3,867			
61	답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550-2	648	2,683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공시지가)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62	답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550-7	6	30	2010년도	토 속 어 류 산업화센터 건 립	부 지 매 입
63	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553-1	747	4,580			
64	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560	1,051	4,425			
65	답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455-6	2	13			
66	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509	854	4,527			
67	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501	1,072	6,261			
68	답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531-3	5,523	34,851			
69	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551-1	1,795	9,801			
70	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551-2	1,983	10,371			
71	답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552-2	1,349	6,664			
72	전	의성군 비안면 동부리 86	4	24			
73	전	의성군 비안면 동부리 20-1	123	809			
74	전	의성군 비안면 동부리 20-3	145	953			
75	전	의성군 비안면 동부리 21-1	79	478			
76	도	의성군 비안면 동부리 21-2	1	6			
77	전	의성군 비안면 동부리 21-3	28	170			
78	전	의성군 비안면 동부리 21-4	4	25			
79	전	의성군 비안면 동부리 21-5	39	236			
80	답	의성군 비안면 동부리 25-3	391	2,491			
81	답	의성군 비안면 동부리 25-5	1	7			
82	답	의성군 비안면 동부리 80-1	22	132			
83	전	의성군 비안면 동부리 85-1	12	85			
84	답	의성군 비안면 동부리 85-5	90	636			
85	전	의성군 비안면 동부리 85-6	27	191			
86	전	의성군 비안면 동부리 85-7	36	255			
87	전	의성군 비안면 동부리 85-8	70	495			
88	전	의성군 비안면 동부리 86-1	54	317			
89	전	의성군 비안면 동부리 86-2	51	300			
90	답	의성군 비안면 동부리 25-4	59	376			
91	전	의성군 비안면 동부리 85-3	375	2,648			
92	전	의성군 비안면 동부리 21-6	488	2,948			
계			87,434	497,536			

□ 기 타 안

-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안 번호	422
----------	-----

제의연월일 : 2010년 3월 15일
제 의 자 : 경상북도의회의장

1. 주 문

경상북도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경상북도교육청 200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사를 위하여 결산검사위원 9인을 선임한다.

2. 제의사유

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3조와 경상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9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해
도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무관련 경험자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나. 자치단체가 집행한 세입·세출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산검사를 통해 검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도·운용상의 각종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2010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고자 함.

3. 제의내용

가. 결산검사위원 선임 : 9인 (인적사항 : **붙임**)

- 도 의 원 (3인) : 이상태, 손덕임, 조동만
- 재무 경험자 (2인) : 지용섭, 박창순
- 공인회계사 (2인) : 이상혁, 배준원
- 세 무 사 (2인) : 권중원, 나재호

나. 위촉기간 : 2010. 5. 10 ~ 5. 28(19일간)

※ 업무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다. 결산검사 대상

- 2009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2009회계연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붙임】

결산검사 선임위원 인적사항

구 분	성 명	연령	주 요 경 력	연 락 처	비고
계	9인				
도의원	이상태	67세	- 제8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 前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08년)	010-2585-2709	
	손덕임	61세	- 제8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8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019-542-1515	
	조동만	63세	- 제8대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 - 제8대 도의회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010-7350-2883	
재 무 경험자	지용섭	63세	- 前 도청 문화재과장 - 前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09년)	010-2522-6736	
	박창순	61세	- 前 도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 - 前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09년)	010-2808-0528	
공 인 회계사	이상혁	36세	- 한경회계법인 근무 - 前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06~'08년)	010-2507-7355	
	배준원	37세	- 정담회계법인 근무 - 前 대구광역시결산검사위원('02년)	010-6523-7660	
세무사	권중원	61세	1999. 7월 세무사 개업 - 前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08년)	011-9572-3434	
	나재호	40세	- 세무사사무소 근무('02~'07년) 2008. 2월 세무사 개업	011-9596-31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의안번호	429
------	-----

제안일 : 2010. 3. 25
제안자 : 경상북도의회의장

☐ 사 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원(15명) 중 2명 결원
※ 농수산위원회 **박노욱 의원**,
통상문화위원회 **박병훈 의원** 사임

☐ 관련근거 : 경상북도의회위원조례 제9조

☐ 임 기 : 2010. 6. 30까지

☐ 추천위원 : **이 종 원 의 원**(농수산위원회)
장 세 현 의 원(통상문화위원회)

의 정 활 동 보 고 서

(제239회 임시회)

2010. 7 인쇄 / 2010. 7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602-5145

FAX : 602-5140

<비매품>